소방공무원법

1장 총칙

1절 의의

2절 임용

3절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2장 신규채용과 시보임용

1절 신규채용

2절 공개경쟁채용

3절 경력경쟁채용시험

4절 시험관리 및 채용후보자 등록

5절 신규임용과 시보임용

3장 보직관리와 인사기록

1절 보직관리

2절 전보 및 파견

3절 별도정원

4절 인사교류

5절 인사관리

4장 승진요건 및 평정관리

1절 승진의 의의와 방법

2절 근무성적평정

3절 경력평정

4절 교육훈련성적평정

5절 가점평정

5장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임용

1절 승진대상자명부

2절 승지심사

3절 승진시험

4절 특별승진

5절 근속승진

6절 대우공무원

6장 복무 및 신분보장

1절 복무

2절 신분보장

3절 정년

4절 보훈

5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6절 고충심사

7절 기타 소방공무원법 관계

8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7장 징계 및 불복

1절 징계의 의의

2절 징계의 사유

3절 징계의 종류 및 효력

4절 징계위원회

5절 징계의 양정

6절 징계의 절차

7절 징계의 집행 및 불복신청

1장 총칙

1절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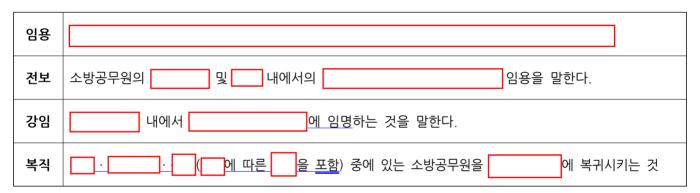
1 소방공무원 법의 목적

제1조(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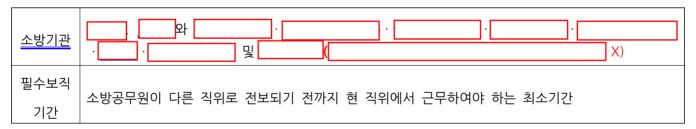


2 용어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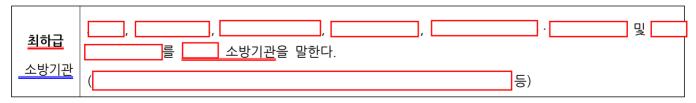
가. 소방공무워법 정의



나. 임용령 정의(2조)



다. 임용령 시행규칙(임용령 시행규칙 19조의 1)



※ 공무원 관계사유 등

공무원관계의 발생사유	(공무원 신분관계의 신규 설정행위)	
공무원관계의 변경사유		
공무원관계의 소멸사유		

3 공무원 구분

- 1. 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 가능
 - 가. 일반직: 기술, 연구, 행정일반(국회, 연구관, 지도관)
 - 나.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법률로 공무원 지정하는 공무원
- 2. 특수경력직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
 - 가. 정무직 : 선거, 국무위원, 장관, 차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등
 - 나. 별정직 : 비서 등 보좌업무 등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정직으로 지정(국회수석, 1급 비서관)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mark>직급, 직렬 X</mark>)의 **군**을 말한다.
-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또는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
-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 9. "직류(職類)"라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계급구분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경(消防額) 소방경(消防額) 소방경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감(消防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장(消防長) 소방장(消防長) 소방정(消防正) 소방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 계급구분

- 1. 소방정감 : 특별시, 광역시, 소방본부장
- 2. 소방감 :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 3. 소방준감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북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2절 임용

1 임용권자

1. 임용권자 (6조)

(고유) 임용권자	대상자	내용
대통령	~	- 의 제청으로 를 거쳐 이 (7개)
소방청장	~	- (6개)
100	이하	

2. 임용권 위임 (임용령 3조)

임용권자	위임자	내용			
대통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정 및 소방령 임용권 -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임용권			
네ㅎㅎ		-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임용권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 중앙소방학교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령 <u>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u> (<mark>강등 X)</mark>			
		- 소방 경 이하 소방공무원 임용권			
		- 시도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소방청장		-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임용권(승진 등)			
	은 소방공무원의 <u>정원의 조정</u> 또는 <u>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u> 등 <u>인사행정 운영</u>				
	<u>상 필요한 때에는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u>				
	-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임용권(<mark>시도소속 X</mark>)				
	-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 소속 <u>소방령</u> 이하 전보권 : <u>서울ㆍ경기</u> 소방학교, <u>서울</u> 종합방재센터			
시도지사	소방서장	- 소속 <u>소방경</u> 이하 전보권 : 해당기관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장	- 소속 <u>소방위</u> 이하 <u>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u>			
중앙 119구조본부장	119특수구조대장 -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 경 이하 전보권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 소방공무원을 <u>승진시키려면</u> <u>미리(<mark>승진임용 후 X) 소방청장</mark>에게 보고해야 한다</u>				

제6조(임용권자)

- ① <u>소방령 이상</u>의 소방공무원은 <u>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u> 거쳐 **대통령**이 <u>임용</u>한다. 다만, <mark>소방총감</mark>은 **대통령이** <u>임명</u>하고, <u>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u>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u>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u>은 소방청장이 한다.
- 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u>위임</u>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⑥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③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 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1.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3.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⑥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u>지방소방학교</u>·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소방체험관 소속 <u>소방경</u> 이하(서울소방학교·<u>경기</u>소방학교 및 <u>서울</u>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u>소방령 이하</u>)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u>소방위</u>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에게 위임한다.
-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 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2 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의 제한)

- 1.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3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2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u>이상의 실형</u>을 선고받고 그 <u>집행이 끝나거나</u>(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u>면제</u>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u>횡령·배임</u>)을 범한 자로서 <u>300만원 이상</u>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u>100만원</u>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음란,공포)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9. <u>미성년자(공직제한 20년 입법예고)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u>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경력경쟁채용 등 요건상 결격사유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사람은 경채를 할 수 <mark>없다</mark>.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면 경채 볼 수 있다.

- ※ 공무원임용시험령 15조 2항
-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채용시험 <u>최종시험 시행예정일</u>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3 임용시기

1. 임용시기(임용령 4조)

도달 X

- ①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③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u>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u>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임용시기의 특례(임용령 5조)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 1.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 가. <u>재직 중</u>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u>전날</u>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 2.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u>직권으로 면직</u>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u>만료일</u> 또는 휴직사유의 <u>소멸일</u>
-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사망 면직은 **다음날** 순직·사망한 사람 특별승진임용은 **전날** 직권면직은 **만료 소멸일**

4 임용의 절차

1. 임용 또는 임용제청 서식 (임용령 시행규칙 제2조)

공무원임용서	임용권자(임용권 위임받은 사람 포함)가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
임용조사서	신규채용 • 승진 또는 면직할 때
임용제청서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
임용제청보고서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

를 첨부해야 한다.

2. 임명장 & 임용장 (임용령 3조의2 및 시행규칙3조)

가. 수여자 : 임용권자(위임자 포함)

나. 수여대상자

신규채용 승진	1. 임명장을 수여한다. 2. 임용권자의 직인 을 날인한다. 이 경우 3.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 임명장에 국새를 함께 날인한다. 4.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u>직인을 갈음</u> 하여 대통령의 <u>직인과 국새를 날인</u> 한다.
전보	1. <u>임용장</u> 을 수여한다. 2.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인사발령통지서 등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 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시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국내외 훈련•국내	외 출장・휴가명령・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할 때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발령과 동시에	계기관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발령인 경우 소방청장이 통지한다.				

4. 인사발령대장(임용령 시행규칙 5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5 인사원칙 등

1.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임용령 제5조의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u>미리 정하여</u>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u>1개월 이전</u>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결원의 적기보충(임용령 6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통계보고(임용령 7조)

지방소방학교 X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u>통계보고</u>의 제도를 정하여 <u>시·도지사</u>,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장 X

- 4.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임용령 7조의2)
-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절 인사위원회

1 설치

- 1.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mark>소방청장</mark>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u>소방청</u>에 <u>인사위원회</u>를 둔다. 다만 <mark>시도지사</mark>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u>시도(시도소방본부 X)에 **인사위원회**를</u> 둔다
-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성 및 운영 (소방공무원 임용령 8조~13조)

1. 인원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

2. 위원장

가. **소방청** : 소방청 **차장**

나. 시도 : 소방본부장

3. 위원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

- 4. 간사
 - 가. 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며,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위원장 X)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
 - 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5. 위원장의 직무
 - 가.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 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에서 최상위 직위 또는 선임이 직무를 대행한다.
- 6. 회의
 - 가.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다. 운영세칙 : 임용령에 규정된 것 외에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u>의결</u>을 거쳐 위원 장이 이를 정한다
- 7. 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8. 운영세칙
 -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u>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u>은 <u>인사위원회 의결</u>을 거쳐 <u>위원장</u>이 이를 정한다.

3 인사위원회의 기능

소방공무원법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소방본부장 X)

<u>위원장</u>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u>지체없이</u> 당해 인사위원회 <u>설치 기관의 장</u>에게 <u>보고</u>해야 한다.

2장 신규채용과 시보임용

1절 신규채용 및 시보임용

1 신규채용

1. 신규채용 시험의 구분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 1) 소방령, 소방사
- 2)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소방위(소방간부)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정하 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시도지사**와 협의 X)

나. **경력**경쟁**채용**시험

- 1) 다수인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전계급 채용가능
- 2) <u>다만</u>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u>적당하지 않으면</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u>다수인을 대상으로</u>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관 채용 가능
- 다.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할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요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시험 실시의 워칙

- 1) 계급별 실시 원칙
- 2)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시 직무분야별 성별 근무예정지역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시험의 실시기관

가. **소방청장** (법 11조)

- 1) 신규채용시험 : 소방공무원 <u>신규채용시험</u> 및 <u>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u>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 2)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나. **시도지사** (임용령 34조)
 - 1) 소속 <u>소방경 이하</u> 신규채용시험 : **시도** 소속 <u>소방경 이하</u> 신규채용시험은 <mark>소방청장</mark> 위임에 의해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2) 시도지사는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신규채용시험 실시하는 경우 <u>시험문제출제</u>를 <mark>소방청장</mark>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3. 응시자격의 제한

가. 일반적 제한

국가공무원법 33조 또는 다른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는 자

나, 학력 제한

- 1) 공개경쟁채용시험 : 학력 제한 없음
- 2) 경력경쟁채용시험 :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채용시험은 학력제한이 있다.

다. 응시연령 제한

시험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이상
고게거재레이니침				25세 이상
공개경쟁채용시험 	<u>18세 이상</u>			40세 이하
	<u>40세 이하</u>	20세 이상	23세 이상	20세 이상
경력경쟁채용시험등 		40세 이하	40세 이하	45세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2211 0141	2211 0144	
사업 · 운송용조종사		23세 이상	23세 이상	
항공 · 항공공장정비사		40세 이하	45세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20세 이상			
의무소방원	30세 이하			
소방간부후보생	21세 이상 40세 이하			

※ 전역자의 연령계산

1. 제대군인 전역자의 상한 연령 연장기간

- 2년 이상 : 3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연장 - 1년 미만 : 1세 연장

2. 전역예정자 응시할 수 있는 경우 :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으로 본다.

※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신체조건 **제한**은 받는다)

-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라. 거주지 제한

소방청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신체조건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u>0.8 이상</u> 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u>색맹</u> 또는 <u>적색약(赤色弱)</u> (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u>40데시벨(dB) 이하</u> 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경력	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u>저</u>			
2 1	<u>혈압</u> (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u>아니어야 한다</u>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u>신경 및 신체</u> 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u>기능상 장애가 없어야</u> 한			
4010	다.			

바. 자격조건(1종대형 또는 1종보통)

- 1. <u>소방**사** 공채</u>시험
- 2.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3. 소방장 이하 경채시험

4. 시험의 방법

가. 채용시험 방법

① 필기시험	교양(일반교양) + 전문(직무수행 필요 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② 체력시험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안부령 (규칙 23조의2, 별표7) 쳐력시험은 총점 60점 만점 중 <u>30점 이상</u>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 신체검사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정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한다.		
④ 종합적성검사	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종합 검정		
⑤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적격성을 검정		
⑥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 방법으로 검정		
⑦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소방간부후보생 신규채용

- 1) 소방간부의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검정의 방법·합격자 결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다.

5. 필기시험의 과목 및 출제수준

가. 공채 필기시험과목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소방령			필-	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사, 헌법, 영어 행정법		해져버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영합.)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제1차 시험과목(필수)				
소방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계열	필수(4)			선택(2)
소방간부	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	흥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	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나. 경채 필기시험과목

분야	계급	필수과목	선택과목		
	정·령·경·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이바디아	성 영 경 경 귀	소방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일반분야	자 그 나	한국사, 영어			
	장·교·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분야	경·위·장·교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왕중군약	9 H 9 T	왕ōᆸⅢ, 왕ō경역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구급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장·교·사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	학개론		
정보통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	퓨터일반		

다. 시험과목 대체

1) 영어

지점이 조리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정 · 령	경 · 위(소방간부후보생)	장·교·사		
토익	700점 이상	<u>625점</u> 이상	550점 이상		
F프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토플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2) 한국사

가) 정, 령, 경, 위 : 2급 이상 나) 장, 교, 사, : 3급 이상

라. 출제수준

1) 소방위 이상 및 간부후보생 :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소방장 및 소방교 :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 소방사 :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공개경쟁채용시험

1. 시험의 공고

가. 시험실시 공고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의 방법, 시기, 장소,	시험실시 20일 전 까지 공고해야 한다.
 (실시가관 또는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실시권 위임자 포함)	<u>시험 일정</u>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실시 <u>90일 전</u> 까지 공고해야 한다.
공채시험 시 	시험실시 공고 <u>내용을 변경</u> 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u>7일 전</u> 까지 공고해야 한다.

- 간부후보생 시험도 위의 시험 공고 규정을 준용한다.

2. 시험의 구분

가.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선택형 필기시험	② 논문형 필기시험	③ 체력시험	④ 신체검사	⑤ 종합적성검사	⑥ 면접검사
필요시 동/				(실기병행 가 능)	

- 나. 응시자는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 못함.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단계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 시험 실시 할 수 있으며, 전단계 불합격 시 다음단계시험은 무효.
- 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 공채는 2차시험(논문형 필기)을 실시하지 않는다.

3. 시험의 합격결정(임용령 46조 1항)

가. 필기시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3배수 범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나.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 이상 득점한 사람 합격자로 결정

다. 신체검사

43조 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라. 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1) 종합적성검사 결과 : 면접시험에 반영
- 2) 면접시험 평정요소
 - 가) 문제해결 능력
 - 나) 의사소통 능력
 - 다)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 라) 협업능력
 - 마) 침착성 및 책임감
- 3) 합격자 결정

총점의 5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 평정요소에 대해 40% 미만 평정시 불합격으로 한다.

마. 최종 합격자 결정

- 1) 공채 및 간부시험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 합산점수로 측정한다.
- 2) 임용권자는 공채, 경채, 간부시험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u>결원 보충할 필요</u>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 <u>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u>
- 3) 결원 보충 : 임용권자는 공채, 경채, 간부시험 최종합격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u>3년 이내</u>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바 동점자의 합격처리

- 1) 공채, 경채, 간부시험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u>합격자</u>로 한다.
- 2)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동점자 처리의 비교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1101171	1. 취업보호 대상자
채용후보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명부작성	* · · · · · · · · · · · · · ·
	3. 년명에 ほ는 사람 문 1. 근무성적평정이 높은 사람
	1. 근下경취경정의 표근 시급
승진대상자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명부작성	3.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스키기원	최종합격자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승진대상자명부
승진시험	순위가 높은 순서 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승진후보자	심사승진 60% + 시험승진 40%
임용	1. 특별 승진 -> 2. 심사승진 -> 3. 시험승진

4. 시험방해 행위금지 및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가.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 금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나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1) <u>합격 취소 및 응시제한 5년</u>: 모든시험에서 다음 행위를 하면 <u>시험 정지 또는 무효</u>로 하거나 <u>합격취소</u>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마)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 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바)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 사용
 - 사)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 시험의 정지 무효 : 다음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라)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 3) 다른 법령 응시자격 제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 정지중에 있으면 시험 응시할 수 없다.

4) 명단의 관보 게재

시험실시권자는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의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5) 징계의결의 요구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해야 한다.

6) 금지약물 사용여부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채용시험 가점

가. 자격증 가점

1) 가점대상

소방사 공채, 소방간부시험 응시자는 그 사람이 취득한 점수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2)가산방법에 따라 가산한다.

2) 가산방법

시험 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 후 각 가점비율을 적용하여 <u>5퍼센트 이내</u>에서 가산한다.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인정 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1) 가점대상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 가점대상 : 소방경 이하 소방시험(간부시험 포함), 경위 이하 경찰시험, 6급이하, 공사단체 채용, 국공립교사
- 3) 가점방법
 - 각 시험마다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과목별 만점에 5%~10% 해당 점수 가점한다.
 -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은 가점하지 않는다.
- 4) 합격인원 제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분야	기점 율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소 압 곤	, 방 문 년 양	1. 소방 관련 기술사·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소방 관련 기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1. 소방 관련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곤	F 년 양	3 0 2 2 1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이상
외국어	영어		1. TOEIC 800점 이상 2. TOEFL IBT 88점 이상 3. TOEFL PBT 570점 이상 4. TEPS 720점 이상 5. New TEPS 399점 이상 6. TOSEL(advanced) 780점 이상 7. FLEX 714점 이상 8. PELT(main) 304점 이상 9. G-TELP Level 2 75점 이상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 IBT 57점 이상 3. TOEFL PBT 489점 이상 4. TEPS 500점 이상 5. New TEPS 268점 이상 6. TOSEL(advanced) 580점 이상 7. FLEX 480점 이상 8. PELT(main) 242점 이상 9. G-TELP Level 2 48점 이상
	일본어 중국어		1. JLPT 2급(N2) 2. JPT 650점 이상 1. HSK 8급 2. 신(新) HSK 5급(210점 이상)	1. JLPT 3급(N3, N4) 2. JPT 550점 이상 1. HSK 7급 2. 신(新) HSK 4급(195점 이상)

비고

- 1. 위 표에서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중 다음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채광(기술·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정한다)
- 2. 위 표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 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 3.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로 한다.

3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1.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법 7조2항)

- 가. 퇴직 소방관 퇴직 시 계급 재임용
- 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임용(령 이하)
- 다.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자 임용(령 이하)
- 라. 전문기술교육 받은 사람의 임용(경 이하)
- 마. 5급 공무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합격자(령 이하)
- 바. 외국어 능통자(위 이하)
- 사 화재감식 범죄수사 2년 이상 경찰 임용(위 이하)
- 아. 의용소방대원(사)
- 가. 퇴직한 소방관을 퇴직시 재직했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제한기간 X)
 - 1) 퇴직사유
 - 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제와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직권면직
 - 나)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해 휴직한자가 휴직기간 만료에도 직무복귀 못해 직권면직
 - 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안 휴직
 - 2) 기간제한
 - 가)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 재임용
 - 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휴직 5년이내 재임용
 - 3) 전력조회 및 확인 :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 된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임용(령 이하)
 - 1) 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시 임용 가능
 - 2)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u>해당분야에서 2년이상</u>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u>항공분야</u> 조종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다. 근무 연구실적자 임용(령 이하)
 - 1) <u>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u>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u>근무 또는 연</u> 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2) 특수기술부문 근무경력: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u>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u>에 근무한 경력 또는 국가기 관에서 <u>구조업무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u>에서 근무한 경력이 <u>2년 이상</u>으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u>근무</u>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화 재 조 사	화재원인 및 피해재산조사기술		
통 신	유선·무선 또는 전자통신기술 컴퓨터 활용기술 X		
소 방 정·소 방 헬 기 조종 및 정비	소방정·소방헬기의 조종기술 또는 소방정·소방헬기의 기관정비 기술		
장 비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전 자 계 산	시스템 관리·조작·분석·설계 또는 프로그래밍기술		
구 급	응급처치기술		
회 계	경리·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 3) <u>퇴직한 소방관</u>으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u>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u>인 사람으로 퇴직사유 및 기간제한이 없으며 전력의 조회 및 퇴직사유의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 4) 의무소방원 복무 마친 사람을 소방사로 임용

라. 전문기술교육 받은 사람 임용(경 이하)

- 1) 학력제한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원에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아별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용예정직무분야	응 시 교 육 과 정
	○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
소 방 분 야	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항공 X)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
	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구급 분야	응급구조학과·간호학과·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화학 분야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외익 군약	사람
기계 분야	기계과·기계공학과·기계설계공학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기 분야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건축 분야	건축과 · 건축학과 · 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비고

- 1. 소방경 이하 박사학위
- 2. 소방위 이하 석사학위
- 3. 소방장 이하 학사학위
- 4. 소방교 이하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 이하
- 5. 유사학과 범위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 마. 5급공무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사. <u>경위 이하</u> 경찰 중 최근 <u>5년 이내</u> 화재감식 범죄수사 <u>2년 이상</u> 근무하고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 어야 한다.

아. 의용소방대원

- 1) 지역요건
 -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 군 지역
 -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 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u>처음 설치</u>하는 경우 관할에 속하는 시 지역 또는 읍·면 지역
- 2) 경력요건 :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 3) 시기요건 : 그 지역에 소방서 119지역대 119안전센터가 <u>처음 설치된 날</u>로부터 <u>1년 이내</u>에 그 지역의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정원요건 :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 119지역대 119안전센터의 공무원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가. 소방정 이하 경력경쟁채용
 - 1) 서류전형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병행
 - 일정 사유로 퇴직한 소방공무원 퇴직한 날부터 3년(또는 5년) 이내 퇴직계급 재임용
 - 5급공무원 시험, 변호사시험 합격자 임용
 - 2) 서류전형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체력시험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 자격증 소지자
 -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있는 자
 - 전문기술교육 받은 자
 - 외국어 능통자
 - 경찰
 - 의소대
 - 3) <u>체력시험 면제</u>: **소방정** 이하 경력경쟁채용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소방준감 이상 : 서류전형

3.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결정

- 가. 필기 실기 매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 3배수 범위, 고득점자먼저
- 나. 체력시험 총점 50% 이상 득점한자
- 다. 신체검사 적합자
- 라. 면접시험 총점 50% 이상 득점한 사람
- 마. 최종합격자의 결정
 - 1) 면접시험 100%
 - 2) 체력시험 25% + 면접시험 75%
 - 3) 필기시험 75% + 면접시험 25%
 - 4) 실기시험 75% + 면접시험 25%
 - 5) 필기시험 50% + 체력시험 25% + 면접시험 25%
 - 6) 체력시험 25% + 실기시험 50% + 면접시험 25%
 - 7) 필기시험 30% + 체력시험 15% + 실기시험 30% + 면접시험 25%
- 바. 추가 합격자의 결정
 - 1)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u>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u> 이 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2) 임용권자는 부정행위로 합격취소되어 결원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다음 순위자를 최종합격자 발표 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시험관리 및 채용후보자 등록

1. 시험위원의 임명

4

- 가. 자격 : 시험실시권자는 다음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 2)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 나. 자격제한 :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시험위원을 그로부터 <u>5년 간</u> 당해인을 소방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라. 시험위원의 수
 - 1)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위원 : <u>각각 2명 이상</u>
 - 2) 시험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응시수수료의 반환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처로히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서류의 제출

필기합격시	공채	경채
	1.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1. 최종학력 증명서 1통
	2.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성적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제출서류	3. 영어시험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통	3. 자격증 사본 1통(국가기술자격증 X)
세골시규 	4. 자격증 사본 1통(<mark>국가기술자격증 X</mark>)	4. 외국어 성적증명서 1통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해 필요하
		다고 공고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사항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	1. 병적사항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
행정정보	증명서	증명서
확인사항	3. 국가보훈부장관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보훈부장관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5. 의사상자 증명서	4. 의사상자 증명서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시행 <u>7일 전</u> 에 시험일시·
서류보완		장소 등 시험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응시자
		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합격자명단의 송부 등

- 시험실시권자는 합격자명단을 생활연고지·근무희망지·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해야 한다.
- 시험실시권자는 합격한자에 대해 시험합격통지를 해야 한다.
-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실시 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채용후보자 등록

가. 채용후보자 등록

- 1) 등록대상자: 채용후보자 등록 대상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 자등록을 해야 한다.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공채 합격자, 경채 합격자, 소방간부로 교육훈련 마친사람
- 2) 등록요령: 채용후보자 등록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u>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u>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u>동일한 경우</u> 시험 응시 제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1 최종학력증명서 2통
 - 2.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X) 2통
 - 3. 경력증명서 2통
 - 4.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2통
 - 5.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
 - 6.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5통
- 3) 등록서류의 심사 및 조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등록서류 심사후 임용적격자에 한해 채용후보자명 부에 등재하고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채 용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시 등록거부 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등록서류는 1통은 임용서류에 첨부하고, 1통은 인사기록서류로 보존한다.

나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 1) 채용후보자명부 : 임용권자는 신규채용합격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성적순</u>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 자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 2) 임용예정계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의해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 가) 취업보호대상자
 - 나)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 다) 연령이 많은 사람
- 3)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 2년
 -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 <u>연장 가능</u>
 - 채용후보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 3. 채용휴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 정 <mark>외</mark>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5 신규임용과 시보임용

1. 신규임용

가. 임용순위

- 1) 명부 등재순위
 -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의해 임용해야 한다.
 - 채용후보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 2) 예외 :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가능
 - 임용예정기<u>관에 근무</u>하고 있는 <u>소방공무원 외</u>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특별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
 -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출생자 X)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임용하는 경우
 -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나. 별도정원 임용

- 1)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 <u>유효기간이 만료</u>될 때까지 임용되지 <u>아니한 사람</u>에 대해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 2)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임용의 유예

- 1) 유예대상
 - 학업의 계속
 - 6월 이상 장기요양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병역의무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
 -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유예신청 : 유예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 3) 유예조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u>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u> 그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u>사유가 소멸</u>하는 경우 <u>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해야 한다</u>.

라.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1)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 성명 •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마. 전력조회

-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경우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장에게 전력조회서에 따라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가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 2) 회보기간 :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장은 전력조사회보고서에 의해 20일 이내에 회보해야 한다.

2. 시보임용

가. 시보임용의 의의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u>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u>한 때에는 임용권자의 <u>재량으로 직권면</u> 직시킬 수 있는 제재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 나. 시보임용의 기간 : 시보임용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1) 소방장 이하 : **6개월**
 - 2) 소방위 이상 : **1년(소방령 이상 시보 포함)**
- 다. 시보임용기간의 계산
 - 1)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mark>아니하는</mark> 기간 : <u>휴직</u>, <u>직위해제</u>, 징계에 의한 <u>정직</u> 또는 <u>감봉 처분</u>기간(<mark>견책 X</mark>)
 - 2)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는 기간 : 시도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 라. 시보임용의 면제(임용령 23조 2항) 변호사시험 합격 X
 -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u>상위계급에의 승진</u>에 필요한 <u>자격요건</u>을 갖춘 자가 승 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 마. 시보임용의 단축 및 시보임용소방공무원 교육훈련(임용령 24조)
 - 1)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 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 2)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과정의 <u>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u>지 않을 수 있다.
 - 3)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u>1호봉</u>에 해당하는 봉급의 <u>80%</u>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바. 시보소방공무원 관리(임용령 22조)
 - 1) 근무상황 지도, 감독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2) 면직 또는 면직제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u>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u>을 거쳐 <u>면직</u>시키거 나 <u>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u>. 바로 면직 X

- 1.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교육훈련을 <u>받는 중</u> <u>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u>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 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소방공무원으로서 <u>품위를 크게 손상</u>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u>직무를 수행하기 곤란</u>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 6.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사. 임용심사위원회

- 1) 설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 2)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지명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
 - 위원 : 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
- 4) 회의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5) 임용심사평가 : 위원회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시 다음을 고려한다.
 - 가)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 나) 근무태도, 공직관
 - 다) 그 밖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 6) 의결서 제출 :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u>회의일부터 10일 이내</u>에 임용권자 또 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7) 회의 결과 통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하거나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결정한 경우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조 관련)

순번	발 령	경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인사기록카드 1통(소방령 이상은 2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1		1 01 0	경력증명서 1통		
l	신 ㅠ	구임용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종합병원장 발행)		
			신원조사회보서 1통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		
2	_	5 진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소방령 승진	임용 신규채용
			승진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구비서류 첨복	<u> </u>
		의 원 면 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 권 면 직	징계위원회동의서 · 진단서 · 직권면직사유설명서 · 기타직	권면직사유를	
3	면 직	면직	증빙하는 서류 1통		
		당 연 퇴 직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당연퇴직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5	5	
		정 년 퇴 직	없음		
4	2	J 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5	る	낭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편·폐지 및 예산감소의 -	관계서류 1통	
6	ᅾ	· 서	공적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각각 1	통	
7	휴 직	및 복직	진단서, 판결문 사본, 현역증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또	는 기타 휴직	공무원 요양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기관 발행
8	직 위 해 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9	전 · 출 입		전·출입동의서 1통		
10	10 시보임용		시보임용 단축 기간산출표 1통		법 제10조제3
10			시도함이 한국 기원인물표 1층		항 해당자

3장 보직관리와 인사기록

1

보직관리

1. 보직관리의 원칙

1소방관 1직위 부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예외를 제외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해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건공분야ㆍ교육훈련 등을 고려한 부여	해당 소방관의 <u>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적성</u>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 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해야 한다.
상위계급직위에 하위계급자 보직 <mark>제한</mark>	<u>상위계급</u> 의 직위에 <u>하위계급</u> 자를 보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상위계급의 <u>결원이</u> <u>있고 승진임용후보자</u> 가 <u>없는 경우</u> 로 <u>한정</u> 한다.
특수자격증 소지자 관련 직위에 보직	<u>특수한 자격증</u> 소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u>자격증과 관련된 직위</u> 에 보직해 야 한다
연고지 고려한 보직	소방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u>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u> 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직의 세부기준 제정•실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 <mark>외</mark> 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 기준을 포함)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 의 보직관리	시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해당 직위에 <u>2년 이상</u> 근무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u>다른 직위에 전보해야 한다</u> 다만, <u>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u> 한다.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 고려하여 <u>1년 범위</u> 에서 <u>전보시기 조정가능</u>)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관을 연속하여 <u>3회이상</u> 소방서장 으로 <u>보직해서는 안된다</u>

2. 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소방간부 의 소방위 임용	-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 에 보직해야 한다
신규채용에 의한 소방사 임용	- 신규채용에 의해 소방사로 임용된 자는 <u>최하급 소방기관</u> 에 보직해야 한다. - 다만 행안부령 이 정하는 <u>자격증 소지자</u> 는 그러하지 <mark>아니하다</mark> .
경력경쟁 채용 임용직위 제한	- 경력경쟁채용 등에 있어서는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u>직위 외의 직위</u> 에 임용할 수 <mark>없다</mark> .

※ 최하급 소방기관 (외근부서에 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u>소방청</u>, <u>중앙소방학교</u>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특별시 • 광역시 • 도 <u>소방본부 • 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u>한 소방기관을 말한다(임용령 시행규칙 19조) **소방서**

3.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과 전문직위 운영

- 가.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최초보직
 - 1)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2)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 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u>교관</u>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교관으로 보직할 수 <mark>없거나 곤란한 경우</mark> 그 교육훈련과 **관계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 나. 전문직위의 운영 등(임용령 27조의2)
 - 1)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 2)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 3)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4.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교육훈련준비, 정년퇴직 X
- 가.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u>휴직자의 복직</u>, <u>파견자의 복귀</u> 또는 <u>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u> 시에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mark>결원이 없어</mark> 그 계급의 정원에 <u>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u>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나.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u>1년 이상</u>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2주 이내</u>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mark>없이</mark> 근무하게 되는 경우
- 다.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위한 파 견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mark>없이</mark> 근무하게 하는 경우
 - 1) 공무원 교육훈련법 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 라. 직제의 신설·개편·폐지 시 2개월 이내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mark>없이</mark>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전보 및 파견

1.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가. 소방공무원 필수보직기간:

- 1)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다른 곳으로 전보할수 없다
- 2)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3) 특례(예외) = 다른 곳으로 전보가능
 -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 3.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 5.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6. <u>임용예정직위</u>에 관련된 <u>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u>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u>6월이상</u>의 <u>근</u> 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8.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u>수사기관(검사기관에서 조사 X)에서 조사를</u> 받고 있는 경우
 - 9.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경력경쟁채용시험 X)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 10. 소방령 이하의 소방관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 11. 임신 중인 소방관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관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12.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나. 교수요원의 필수 보직기간

1) 중앙 • 지방 소방학교 교관(=교수)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특례(예외)

- 1. 기구의 개편 시
- 2. <u>직제</u> 정원의 변경 시 <u>징계처분 X</u>
- 3. 교육과정의 개편·폐지 시 교육**내용**의 변경 X
- 4.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경력경쟁채용자 필수보직기간

구분	필수보직기간	적용특례(예외)
퇴직공무원 재임용 5급 공무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2년(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 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한)	<u>최저단위 보조기관</u> 내에서의 전보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근무실적 · 연구실적자 전문기술교육 받은자 외국어 능통자 경찰공무원	5년(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 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한)	기구개편,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자의 전보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형사사건에 관련 수사기관조사자의 전보
의용소방대원	5년(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 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한)	폐직 또는 과원으로 전보

- 라. 위탁교육훈련 받고 관련 직위에 보직된 자의 전보제한
 - 다음 기간 내에 소방관 교육훈련기관 교관 또는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u>직위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u>
 - 가)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2년
 - 나)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3년
- 마. 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의 전보제한 : 승진대상자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 바.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일
-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 4) 기구의 <u>개편, 직제</u> 또는 <u>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직급의 명칭만 변경</u>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u>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u> <u>담당직무 변경</u> -> <u>임용된</u> 날로 보는 경우임

2. 파견근무(임용령 30조)

파견기간	대상	연장
1년 이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선발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 을 위해 필요한 기간	2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2년 이내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나 그 외 기관·단체에서의 <u>국가적 사업</u> 의 수행 2. 다른 기관의 <u>업무폭주</u> 로 인한 <u>행정지원</u> 의 경우 3.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u>특수 업무</u> 의 공동수행 4.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u>관련업무 수행</u> · <u>능력개발</u> 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u>자료수집</u>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필요한기간	1.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u>교육훈련</u> 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u>국제기구</u> , <u>외국의 정부</u> 또는 <u>연구기관</u> 에서의 <u>업무수행</u> 및 <u>능력개발</u> 을 위해	
미리 요청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해야 한다. 1. 교수요원 선발 또는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3.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나 그 외 기관·단체에서의 <u>국가적 사업</u> 의 수행 4.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u>특수 업무</u> 의 공동수행	
파견 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소속 소방공무원(시도지사가 임용권 행사하는 소방공무원 제외)을 파견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국가적 사업 2.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3.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 6. 국제기구, 외국 정부,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 7. 국내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 국가정책수 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소방경 이하 협의생략 가능 파견기간 1년미만 소방청장 승인

3 별도정원

1. 별도정원의 범위(임용령 31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가 장기간 파견

- 1) 1년 이상 소방공무원의 파견(교육훈련을 위한 파견 제외)
- 2)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공무원,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파견 인정
- 3)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 정년 잔여 1년 이내 있는 자의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 배양연수

나.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

- 1)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37조에 따라 훈련기간이 <u>6개월 이상</u>인 국<u>외</u>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 2)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37조에 따라 수립하는 훈련기간이 <u>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u>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u>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u>된 경우
- 3)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37조에 따라 소속 <u>소방경 이하</u>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이 <u>6개월</u>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다.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 • 병가 등

-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u>6개월</u> 이상인 경우
-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라. 6개월 이상 휴직 (육아휴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 이상 휴직으로 별도정원 인정 가능)
 -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마치기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을 때
 - 3)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5)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 6)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 7)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
 - 8)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
 -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
 - 10)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나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등

마. 파면, 해임, 면직처분 등의 경우

- 1) 파면, 해임, 면직, 강등 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u>무효·취소 결정</u> 또는 판결시 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전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2) 직위해제 처분 : 중징계·형사사건 직위해제 기간이 <u>6개월 경과</u>시 해당 사람의 직급·직위·계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파견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협의

가. 별도정원의 사전 협의 및 승인

다음의 별도정원 결원 보충시 소방청장은 미리 행안부장관과 협의하며, 시도지사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1년 이상의 파견
- 2)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
- 나, 사건 승인의 예외

시도지사는 <u>행안부장관</u>의 <u>승인</u>을 받아야 하되, <u>소방령 이하</u> 시·도 소방공무원의 보충하는 경우에는 <u>승인을 받지</u> 않고 보충할 수 있다.

3.. 별도정원의 소멸

- 가. 별도정원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소멸된다
 - 1) 휴직자의 복직
 - 2) 파견자의 복귀
 - 3) 파면 해임 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 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은 휴직자 복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4 인사교류(교류임용)

1. 인사교류의 근거 및 대상

가. 인사교류의 근거

- 1)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2) 인사교류의 대상,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

- 1) 시·도간 인사교류계획 : 소방청장은 시도 상호간 소방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가) 시·도간 <u>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u>을 위해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이하 X)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 나) 시 도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 시 도간 교류하는 경우
 - 다)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2) 소방청과 시·도간 인사교류계획 : 소방청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인사교류의 절차 등

- 가. 인사교류의 절차(임용령 29조 2항, 3항, 시행규칙 21조)
 - 가) 교류인원(소방경 이하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경우는 <u>제외</u>)은 <u>필요한 최소한</u>으로 하되, 소방청장은 <u>교류인원</u>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mark>시·도지사</mark>의 <u>의견을 들어야 한다.</u> 협의할 수 있다 X
 - 나) 소방청장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의 <u>동의 없이</u>는 인사교류대상자의 <u>직위</u>를 <u>미리</u> 지정하여서는 안된다.
 - 다) 교류임용의 동의 : 소방청과 시·도 간 및 / 시·도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 인사교류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시·도 소속 소방 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인사교류 당시의 계급보다 <u>상위(하위 X)계급인 경우</u>에는 <u>동의를 받지 않을</u> 수 있다.
- 나. 전입 전출요구 및 동의(임용령 시행규칙 21조)
 - 1)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전입·전출동의 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 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2) 전입·전출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소방공무원 전출·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15일이내</u>에 회보해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해야 한다.

다. 교류임용의 제한

소방청장은 소방인력 관리상 필요한 경우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5 인사관리

1. 인사기록의 작성

가. 인사기록 작성 보관

임용권자(임용권 위임 받은자 포함)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 보관해야 한다.

- 나. 인사기록관리자(임용령 시행규칙 10조 1항)
 - 1) 인사기록관리자

소방청장,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X

- 2) 인사기록 관리담당자 : 인사기록관리자가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 다. 인사기록의 종류(임용령 시행규칙 11조)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	7) 전력조사회보서
,	하는 서류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 선서문	5)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9)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
3) 신원조사회보서	6) 경력증명서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라.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임용령 시행규칙 12조)
 - 1)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작성
 - 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해야 한다.
 - 나) <u>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u>은 작성한 인사기록을 임용령 13조1항에 따라 <u>직접 보관</u>하거나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2) <u>퇴직</u>소방공무원을 <u>재임용</u>한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3) 전보제한 사유의 기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20조(전보의 제한)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u>위탁교육훈련 이수자</u>)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u>경력사항</u>란에 기재해야 한다.

- 4) 인사기록자가 <u>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는 경우</u> 본인의 정당한 요구 X(인사기록 수정사유)
 - 가) 분실한 때
 - 나)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다)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 라)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관리담당자 X)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위해제, 일반사면 X

2. 인사기록의 관리

- 가. 인사기록의 보관(잉용령 시행규칙 13조)
 -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u>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u>・유지・관리되는 <u>인사기록은 제외</u>한다)은 아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 가)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인 경우 :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 나)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기관인 경우 : **시도지사**
- 나. 인사기록의 이관(임용령 시행규칙 13조 3항)

소방공무원이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가 후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 게 지체없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한다)와 최근 <u>3년간(소방위 이하</u>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u>2년간</u>)의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표의 사본(전자문서 포함)을 송부해야 한다.

- 다.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임용령 시행규칙 14조)
 - 1) 인사기록 정리

인사기록<u>관리자</u>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u>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u>이 있는 때에는 <u>지체 없이</u>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2) 인사기록내용 변경신고

소방공무원은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u>사유가 발</u>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인사기록 정리 및 변경보고

상기 규정에 의하면 <u>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u> · 유지 · 관리되는 <u>인사기록은 제외</u>한다)이 <u>변경</u>된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u>소방기관의 장</u>에게 소방공무원 인사기록 변경통보(보고)서) 별지4호에 <u>증빙서류</u>를 <u>참</u> 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 라. 인사기록의 열람(임용령 시행규칙 15조)
 - 1) 인사기록의 열람제한

인사기록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 가) 인사기록**관리자**
- 나) 인사기록**관리담당자**
- 다) **본인**
- 라)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 2) 인사기록의 열람 시 준수사항

위 1)의 <u>다)와 라)</u>의 경우 <u>인사기록**관리자(담당자 X)의 허가</u>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u>소정의 장소에</u> <u>서 열람</u>하여야 하며 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u>**

마. 인사기록의 수정

- 1) 인사기록의 수정금지 : 다음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인사기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 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 2) 증빙서류의 확인

본인의 정당한 요구에 의하여 인사기록을 수정하는 경우 <u>인사기록관리자</u>는 법원의 <u>판결</u>,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u>증빙서류</u>, 기타 정당한 <u>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u>하여야 한다.

바. 퇴직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보관(임용령 시행규칙 17조)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당시 소속기관의 인사기록관리자가 따로 영구 보존한다.

사. 교육훈련성적의 보고 등(임용령 시행규칙 18조)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u>교육훈련을 마친 날</u>로부터 <u>10일 이내</u>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아.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해 최하기관 단위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표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3.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임용령 시행규칙 14조의2)

가. 말소대상

-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야 한다.
 - (1) <u>강</u>등 : <u>9년</u> 2020년 9월 1일 강등 -〉 말소시기 2029년 12월 1일
 - (2) <u>정</u>직 : <u>7년</u>(3) <u>감</u>봉 : <u>5년</u>(4) <u>견</u>책 : <u>3년</u>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때 <mark>직위해제 X</mark>
- 4)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때
 - (1) <u>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u>로부터 <u>2년이 경과</u>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5) <u>불문(경고)기록</u> :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통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한다.

나. 말소방법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에 <u>**말소된 사실을 표기**</u>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u>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u> 해야한다

- 다.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사무규정에 따른다.
- 라.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u>말소방법, 절차 등</u>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의 예에 따른다. 인사혁신처의 예규는 <u>인사혁신처장</u>이 정한다.

4장 승진요건 및 평정관리

1 승진의 의의와 방법

1. 승진임용의 구분 등

가. 승진의 의미

1) 형식적 의미 : 하위계급 -> 상위계급

2) 실질적 의미 : 물질적 욕망 충족, 권력욕 충족, 동기유발, 근무의욕 증진, 행정의 능률화와 안정화 도모

나. 승진임용의 방법(법 14조)

소방감 이상	임의승진 - 임용권자의 임의선발에 의한 승진임용으로 이루어진다.
소방준감 이하	승진심사
소방정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승진은 심사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소방령 이하	병행승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할 수 있다 시험에 의한 승진은 13조 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공로자 특별승진(명예퇴직 공로자는 소방정감 이하)
소방경 이하	근속승진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상당히 초과하여 장기간 근무한 자는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 사 4년 / 교 5년 / 장 6년 6개월 / 위 8년
전계급	순직자

다.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승진임용규정 4조)

- 1) 임용권자(위임자 포함)가 당해 연도의 실제 결원 및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정한다.
- 2) 당해 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 정해야 한다.
- 3)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임용 비율: 계급별로 심사승진 60%, 시험승진 40%
- 4) 특별승진임용 : 당초 승진임용예정인원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 = 당해 계급 승진임용 예정인원수
- 5)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별도 책정 : 소방경 이하 30%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 <u>38조 1항 1호·4호·5호 및 2항</u>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 그 비율을 <u>초과</u>하여 정할 수 있다. 직무정려공적자, 명예퇴직 공적자, 순직자

2.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가.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소방정 : <u>3년</u> 소방준감 X

- 소방령 : 2년

- 소방경 : <u>2년</u>

- 소방위 이하 : 1년

나. 적용의 특례

- 1) 적용배제
 - 순직자
 - 직무수행능력 탁월자, 명예퇴직자 : 승진임용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
- 2)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 이상 재직
 - 직무정려공적자 : 승진임용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
- 다.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제외되는 기간
 - 1) **휴직**기간
 - 2) **직위해제**기간
 - 3) 징계처분기간
 - 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6조 1항 2호에 따른 <u>승진임용 제한</u>기간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 6개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라. 최저근무연수에 <u>산입하는 기간</u>(승진임용규정 5조 2항)
 - 1)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포함
 -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3년 이내)
 - 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으로 인한 휴직기간
 - 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됨으로 인한 휴직(휴직기간)
 - 라) <u>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u>,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밖의 기관에 <u>임시로 채용</u>될 때(채용기간)
 - 마) <u>해외 유학</u>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휴직기간의 <u>50%</u>에 해당하는 기간 인정(<u>3년</u>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바) <u>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u>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u>임신</u> 또는 <u>출산</u> 하게 되었을 때 <u>휴직</u>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u>자녀 1명</u>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 i.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이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인 경우
 - ii.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위해제 기간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포함
 - 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u>소청심사위원회</u>의 결정 또는 <u>법원의 판결</u>에 따라 <u>무효 또는 취소</u>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u>형사사건</u>이 <u>법원의 판결</u>에 따라 <u>무죄로</u> 확정된 경우
 - 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① 및 ②에 모두 해당
 - ①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 징계령 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 ①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u>관할 징계위원회</u>가 <u>징계하지 않기로</u> 의결한 경우
 - 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②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u>사법경찰관</u>이 <u>불송치</u>를 하거나 <u>검사</u>가 <u>불기소</u>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3)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u>재임용 당시의 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u>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에 포함한다.
- 4) 다른 법령에 따라 <u>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장 이상</u>의 소방공무원으로 <u>임용된 경우</u>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일부터 <u>10년 이내</u> 경력에 한정하여(<u>2할</u>)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5) 법원조직법에 따른 <u>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서</u> 수습한 기간은 <u>소방령 이하</u>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 6)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u>강등 및 강임된 계급 **이상**</u>에서 <u>재직한 기간</u>은 강등 및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 7)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u>원계급으로 승진</u>된 경우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 8) 시간선택제전환 소방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 i.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 ii.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 1년을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 iii.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u>시간선택제전환</u>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u>둘째 자녀</u>부터 <u>각각 **3년**의 범</u>위에서 그 기간의 전부
- 9)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3조1항)

(1) 시험승진 : **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

(2) 심사승진 :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3) 특별승진 : 승진임용예정일

3. 승진임용의 제한

- 가. 승진임용의 제한자
 - 1) 징계처분기간 등
 - 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상 <mark>질병</mark> 등으로 인한 휴직자를 <mark>명예퇴직</mark> 또 는 순직자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제외)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 <u>강등 정직</u> : **18월**
 - (2) 감봉 : 12월
 - (3) 견책: 6월
 - ※ <u>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령, 성희롱, 성매매</u> 징계처분은 각각 <u>6개월</u>을 추가로 더한다.
 - 다) 징계에 관해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u>18개월</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u>근신・영창</u>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u>6개월</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교육 미이수자
 - (1)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 (2) 관리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 (3)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하지 못한사람
- 나.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승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mark>다시 징계처분</mark>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단축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u>혼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u>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2 근무성적평정

1. 대상 및 시기

가. 평정대상 : 모든 소방정 이하 평정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승진임용제한기간 <mark>불문</mark>

나. 평가항목 등

- 1) 평가항목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발전성 등에 대해 평정한다.
- 2) 평정결과의 활용 : 승진 전보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 다. 평정시기(임용규정 시행규칙 4조)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평정결과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u>공개하지 아니한다.</u>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 2조 3호의 <u>소방기관의 장</u>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경력평정표·교육훈련성적표를 <u>10일 이내</u>에 승진대상 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가. 소방공무원이 <u>휴직, 직위해제</u>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u>실제 근무기간</u>이 <u>1개월 미만</u>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 나. 소방공무원이 <u>국외 파견</u> 등 <u>교육훈련으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u>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 다. 소방공무원이 <u>6월 이상</u> <u>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u>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 라. 전보된 자의 평정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u>1개월</u>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마.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의 평정

<u>2월</u>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바. 인사교류임용된 자의 평정

소방공무원이 <u>소방청</u>과 <u>시·도 상호간 인사교류</u>된 경우에는 <u>인사교류 전</u>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3. 근무성적평정 방법

가. 근무성적 평정자(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6조 별표1)

소:	속	직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소방청	관·국 관·국 외		소속 국장 소속 과장	가장	
중앙소니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	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빙	}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시 · 도 스	소방본부	소방정			
소빙				소속 시·도 <u>부시장</u> 시도지사 X	
지방소년	방학교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서울종합'	방재센터		소속 시 · 도 소명본구성	또는 부지사. 다만, 지방소방학교	
119특수	-대응단			장의 경우에는 차장	
소방처	ll험관				
소방청	관·국	소방령	소속 과장	소속 국장	
700	관·국 외	_ 및	그득 되장	차장	
중앙소년	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	구조본부	소방경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구리스비	l여그의	소방령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十 日 二 C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과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 · 도 스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빙	상서	소방령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년	지방소방학교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서울종합!	방재센터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	-대응단	소방경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처	험관		소방체험관장		
소방청	관·국			소속 국장	
工0.0	관·국 외	소방위	<u>소속 과장</u>	차장	
중앙소년	^と 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		이하	<u>팀장 X</u>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병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시 · 도 길	시·도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FIJ		소속 부서장(센터장, 구조대장)	소소 소바니라	
工。	소방서		부서장인 경우 소방행정과장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년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	방재센터	이하	소속 부서장(과장 등)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	-대응단		소속 부서장(과장 등)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처	ll험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체험관장	

- 1. "관·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차장실,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 2. "소속 국장"은 기획조정관, "소속 과장"은 대변인, 담당관, 실장, 팀장·구조대장·센터장 등 과장급 부서장을 포함
- 3. 청장실 및 차장실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본다.
-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 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나. 평가요소 및 평정방법

근무실적(10점)		직무수행능력(10점)			직무수행태도(10점)				
①직무의 양	②직무수행의	③직무수행의	④지식 및 기술	⑤이해력 및	⑥기획력 및	①관리능력 및	®성실성 및	⑨친절성 및	⑩적극성 및
(3점)	정확성 (4점)	신속성(3점)	(3점)	판단력(2점)	창의력(2점)	지휘력 (3점)	규 율준수 (3점)	협조성(3점)	책임성 (4점)

※ 소방위 이상은 ⑦관리능력 및 지휘력,

소방장 이하는 ⑦관리능력 및 집행력 으로 대체하여 평정한다.

1. 4점: 수(4), 우(3.75), 양(3), 가(2)

2. 3점: 수(3), 우(2.25), 양(2), 가(1.75)

3. 2점 : 수(2), 우(1.75), 양(1.5), 가(0.75)

다. 근무성적의 평정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7조)

총 <u>60점 만점으로 평정하되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u> 평정하고,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해야 한다.

1) 수 : 55점 이상 ~ 60점 : 20% 2) 우 : 45점 이상 ~ 55점 미만 : 40% 3) 양 : 33점 이상 ~ 45점 미만 : 30% 4) 가 : 33점 미만 : 10%

※ <u>"기" 평점을</u> 할 경우 평정표에 그 <u>사유를 명기</u>해야 한다. 또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가" 비율은 **"양"**에 가산한다.

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가.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 1) 설치기관 : 승진대상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둘 수 있다.
- 2) 설치목적 : 근무성적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소정의 분포비율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함.

나. 위원회 구성

- 1)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 중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3인 이상 5인 이하 위원을 지정하여 구성
- 2)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워놓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 조정방법

- 1)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소정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다.
- 2)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라. 재조정 요구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조정결과가 <u>심히 부당</u>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이의 <u>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u>.

3

경력평정(승진임용규정 9조)

1. 대상 및 시기

가. 평정대상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모든 소방정 이하 X)

나. 평정시기

1) 경력평정 :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u>연 2회</u> 실시하되, 매년 <u>3월 31일</u>과 <u>9월 30일</u>을 기준 정기 또는 수시실시 X

2) 재평정 : 경력평정 실시한 후 평정한 사실과 <u>다른 사실이 발견</u>된 때에는 경력을 **재평정**해야 한다.

다. 평정방법

1)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 /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

2) 평정기간

계급	평정기간	기본경력	초과경력	기본기간점수	초과월별점수	1년초과점수	총평점점						
소방정	5	3	2	8.66 / 17.33 / 26	0.167	2 / 4	30점(26+8)						
소방령	7	2	2	_	2	0	2	2	4		0.062	0.74 /1.49	
고양당	/	3	4	7.33 / 14.66 / 22	0.062	2.23 / 3							
소방경	6	3	3		0.002	1 /1.99 /							
소방위	5	2	3	11 / 22	0.083	3	25점(22+3)						
소방장	3	2	1	11 / 22	0.25	3							
소방교	2	1년6개월	1년6개월	14.66.7.22	٥٦	2							
소방사	2	1년6개월	1년6개월	14.66 / 22	0.5	3							

라. 경력평정 기간계산

- 1)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과 동일하다.
 - 예외 : 승진임용제한기간 및 신규임용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 2) 평정<mark>제외</mark>기간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정직,감봉)은 평정기간에서 <mark>제외</mark>한다.
- 3) 평정**포함**기간 : 공무상 질병, 병역의무 이행, 징계처분 무효·취소, 근무기간, 소방<mark>외</mark> 경력 <mark>2할</mark>, 사법연수생, 강등 계급 이상 계급에서 재직, 시간선택제 근무 전부 또는 일부
- 3) 경력단위 기준 :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 산입 🗶

마. 경력의 평정점

- 1)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에 의해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 한다.
- 2) 경력평정의 평정점 : 25점 만점(소방정 30점) / 기본경력 22점(소방정 26점) + 초과경력 3점(소방정 4점)
- 3)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교육훈련성적평정

1. 시기 및 대상ㆍ기준

가. 평정시기

- 1) 평정시기 :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
- 2) 재평정 : 경력평정 실시한 후 평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경력을 재평정해야 한다.
- 나. 평정대상 및 평정 방법 : 소방정 10점 / 소방령이하 15점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				
소방령•경	관리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체력검정성적 5점 (행안부령)
소방위 이하	전문능력성적	3점	(행안부령)	직장훈련성적 4점	
그러 이이	(행안부령)		(6616)		(6616)

다. 평정자와 확인자(경력평정과 동일)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 감독자가 된다.

라.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 1)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평가하지 않는다.
- 2) 신임교육과정 졸업한 경우 임용예정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 3)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와 방법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 4) 교육훈련성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교육훈련성적 평정방법

- 가.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방법(행안부령)
 - 1) 신임교육과정
 - 2) 전문교육훈련과정
 - 3) 공무원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외부 교육과정(해당 계급 1점 초과할 수 없다)
 - 4) 교육훈련기관·공무원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과정(해당 계급 1점 초과할 수 없다)
- 나. 직장훈련성적 : 직장훈련 성적 중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
 - 1) 령 ~ 장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 교 ~ 사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 평정단위 평점점이 없는 경우 평정점 산정(<u>신규임용</u> 또는 <u>승진임용</u>으로 <mark>최초</mark> 평정하는 경우 제외)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그 직 <mark>전</mark> 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 평정점 + 2.67 / 2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국천에 중앙한 중앙한귀기간 중앙함 + 2.0/ /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그 지층에 펴져하 펴져다이기가 펴져져 ㅗ 2.67 / 2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 평정점 + 2.67 / 2			
위 두 개 제외한	평정점이 <mark>없는</mark>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한 평정점 <mark>및 직후</mark> 평정한 평정점 <mark>및 직후</mark> 명정한 평정점 및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경영점에 없는 경영한귀기산의 <u>역산 및 역후</u> 경영한 경영점 <mark>정반</mark>			
평정점이 <mark>없는</mark>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 평정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	단위기간 평정점 + 2.67 /2			

다. **체력검정**성적(**행안부령**)

- 1) 령 ~ 장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 교 ~ 사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1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 평정단위 평점점이 없는 경우 평정점 산정(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으로 최초 평정하는 경우 제외)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그 직 <mark>전</mark> 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 평정점 + 2.5 / 2		
가장 최근 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역전에 중앙한 중앙단위기산 중앙점 + 2.5 /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그 지층에 편점히 편점단이기가 편점점 + 2 5 / 2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 평정점 + 2.5 / 2		
위 두 개 제외한	면거거이 어느 면거다이기가이 지거 미 기층 면거취 면거 <mark>면</mark> 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명정점이 <mark>없는</mark> 평정단위기간의 <u>직전 및 직후</u> 평정한 평정점 <mark>평균</mark>		
평정점이 <mark>없는</mark> 평정단위기간이	[[[[[]]]] [[]] [[]] [] [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	명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 /2		

- 4) 체력평가 방법 : 매년 4~5월 중 6개종목 실시
- 라. 전문능력성적 :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소방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보유 평정

소방사	- 1종 대형(1.5점) - 응구사 2급(또는 1급), 간호사 1.5점 - 취득시기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각각1.5점	응구사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위험물 기능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기사), 화대능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초급현장지휘관			
소방교	각각 3점	응구사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소방장 소방위	보유평정 3개 1.5점 4개 2점 5개 2.5점 6개 3점	응구사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 산업기사,기사(기계, 전기),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위험물 산업기사, 기능장 자동차 정비기사,기능장 화재대응능력 1급, 인명구조사(1급,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화재감식평가 산업기사 • 기사, 초급현장지휘관			

3. 평정결과의 고지

가. 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 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이의신청

피평정자는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가점평정

1. 가점평정 기준

가. 가점평정 근거 :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

나. 평정기준 :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기 자격증	자격증(소방업무관련)	0.5점 이내	O E걸 이미	
시역 등	전산능력	0.5점 이내	0.5점 이내	
학위취득 및	학위능력	0.5점 이내	0.571.01.11	
언어능력	언어능력	0.5점 이내	0.5점 이내	5점 이내
격무 • 기피부서		2.0점 이내	2.0점 이내	
우수	·실적	2.0점 이내	2.0점 이내	
인사교-	류 경력	3.0점 이내	3.0점 이내	

2. 가점평정 대상

가. 자격증 가점평정

1) 소방업무관련 가점

가) 0.5점: 기술사, 기능장, 1급~4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나) 0.3점: 기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 기관사

다) 0.2점: 산업기사, 기능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2) 전산능력 가점:

가) 0.5점 : 컴활 1급

나) 0.3점 : 컴활 2급, 워드프로세서

나. 학위 및 언어능력

1) 언어능력

2) 학위취득 : 전문학사 0.1 / 학사 0.2 / 석사 0.3 / 박사 0.5

다. 격무 • 기피 부서

- 1) 1개월마다 0.05점 이내 가점평정 가능
- 2) 가점 대상기간 산정기준은 승진임용 규정 5조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 3) 가점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u>15일 이상</u>은 <u>1개월</u>, <u>15일 미만</u>은 <u>산입하지 아니한다</u>.

라. 우수실적

- 1) 배점 : 전국단위 2점/회 이내 / 시도단위 0.5점/회 이내(최대 1점)
- 2) 금상 1 / 은상 0.8 / 동상 0.6 / 장려 노력상 0.5 / 특별상 0.5 / 우수상 0.3 / 우량상 0.1
- 3)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만 4인 이내 공동실적은 배점 범위내에서 동일하게 가점 부여마. 인사교류
 - 1) 소방청, 중앙부처에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
 - 2) 1개월마다 0.125점씩 가점 평정
 - 3) 가점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u>15일 이상은 1개월</u>, <u>15일</u> <u>미만</u>은 <u>산입하지 아니한다</u>.

5장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임용

1 승진대상자명부

- 1.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승진임용규정 11조)
- 가. 작성대상 : 승진요건을 갖춘 소방정 이하
 - 1) 소방정 : 근무성적평정 70%, 경력평정 20%, 교육훈련성적 10%
 - 2) 소방령 이하 : 근무성적평정 70%, 경력평정 15%, 교육훈련성적 15%
 - 3) 가점대상이 있을 경우 :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
- 나.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정방식
 - 1) 소방정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 소방교 이하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ᄀᄀᄀᄭᆒᅖᄸᇶᆸᅖᄸᄄᄓᄀᄓᄜᄸᄸᅟᅟᄱᄄᄸᄼ
가장 <mark>최근</mark> 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 <mark>전</mark> 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 평정점 + 45점 /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 평정점 + 45점 / 2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그후에 ㅇㅇ한 ㅇㅇ근케기단 ㅇㅇㅁ ' 4기ㅁ / 2
위 두 개 제외한	명정점이 <mark>없는</mark>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한 평정점 <mark>평균</mark>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영영점에 따는 영영단위기신의 <u>역산 및 역부</u> 영영인 영영점 <mark>영반</mark>
평정점이 <mark>없는</mark>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 평정
연속하여 <mark>2회</mark> 이상 있는 경우	단위기간 평정점 + 45점 / 2

- 5)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한 평정점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
- 6)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다. 작성권자
 - 1) 소방청장
 - 가)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 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상
 - 다)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령 이상
 - 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 2)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워
 - 3) 국립소방연구원장 :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 4) 시도지사 :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아래 5)항 제외)
- 5) <u>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장</u> : 관할 소속 <u>소방위</u> 이하
- 라. 작성기준일 :
 - 1)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 2) 승진대상자명부는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 마. 동점자 순위 : 위 규정으로도 순위가 결정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u>작성권자</u>가 <u>선순위자를 결정</u>한다.
 - 1)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4) 소방공무원으로 <u>장기근무</u>한 사람

2. 기타명부

- 가. 승진대상자 통합명부작성(승진임용규정 11조3항, 4항)
 - 1)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관할 승진심사위원화가 설치된 **기관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u>선순위자</u> 순으로 승진대상 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 2)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 나. **승진제외자명부 작성**(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19조 2항)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u>승진제외자명부</u>를 <u>작성</u>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mark>뒷면에 합철</mark>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 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mark>붉은 글자로</mark> 기재하여야 한다.

- 1)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 미달자
- 2) 승진 임용 제한사유 해당자
- 3)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시험 부정행위로 5년간 시험응시 불가자

3.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과 삭제

가, 조정사유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 1) 전 출입자가 있는 경우
- 2) <u>퇴직자</u>가 있는 경우 **파견자X**
-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 4) 승진임용제한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 5)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6)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 7)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 X 가점사유 발생·소멸 X
- 8)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 9)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나. 조정기준일 :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mark>전월말일 X</mark>)까지 할 수 있다.
- 다.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될 경우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 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 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해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 2)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또는 승진심사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의 경우
 - 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하며,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에 각각 적는다.
 - 나)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추가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서 삭제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 3)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평정을 재평정한 경우 : 승진대상자명부 비고란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 4) 퇴직자 :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비고란에 퇴직일과 그 사유를 적는다.
- 5)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 :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비고란에 승진임용일 또는 후보자 확정 된 날과 그 사유를 적는다.

4.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발생일(승진임용규정 14조)

- 가. 명부작성 시 :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나. 명부조정·삭제 시 : 명부의 조정·삭제한 날로부터(다음날 X) 효력이 발생한다.

5. **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승진임용규정 15조)

가 명부작성 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u>30일 이내</u>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하는 <u>기관의 장</u>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명부조정 • 삭제 시

승진대상자명부를 <u>조정하거나 삭제</u>한 경우에는 그 <u>사유를 증명하는 서류</u>를 첨부하여 즉시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승진심사

1. 승진심사 횟수 등(승진임용 규정 16조)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u>연 1회 이상</u>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u>기관의 장</u>이 <u>정하는 날</u>에 실시한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해야 한다.

2. 승진심사위원회

가. 설치

-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를 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승진위원회를 둔다.
-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가) 소방청 및 대통령령(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에 의원회를 둔다
 - 나)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시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나. 구성

- 1) 중앙승진심사위원휘 : 위원장 포함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다. 위원장 및 위원

-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소방청장이 위원은 상위계급자, 외부전문가 중에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해당 <u>위원회 설치된 기관의 장</u>이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가)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 소방관 또는 외부전문가
 - 나) 시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 소방관 또는 외부전문가
 - 다)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 승진심사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외부전문가X
- 3) 위원장의 역할
 - 가)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u>미리 지명한 위원</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라. 심사위원 겸직 <mark>금지</mark> : 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 중에 <u>2이상 계급</u>의 승진심사위원을 <u>겸할 수 없다</u>.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근속승진심사 또는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보통승진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 가)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나) 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당해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바.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승진임용 규정 19조)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시·도 소속 소방정의 <u>소방준감</u> 으로의 승진심사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의 <u>소방정</u> 이하로의 승진심사
시•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u>소방정</u> 이하로의 승진심사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u>소방정</u> 이하로의 승진심사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의 <u>소방령</u> 이하에의 승진심사

사.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 1) 회의소집 :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mark>위원장 X</mark>)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의진행 및 의결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3) 준수사항(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23조)
 - 가) 서약서 제출

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개화와 동시에 승진심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출입제한 및 외부와의 연락 금지

승진 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거나 외부연락을 해서는 안된다.

다) 심사수칙의 **주지**

간사는 승진심사 개시 전에 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해야 한다.

라) 행위, 언어의 제한

간사와 서기는 당해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아니된다.

3. 승진심사 대상 및 제외

가. 소방공무원법 규정

승진심사위원회는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u>5배수</u> 범위에서 승진후 보자를 심사·선발 한다.

나. 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심사는 승진대상자 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레로 별표 구분에 따른 수만큼 대상으로 실시한다.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인 사람의 수
1 ~ 10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u>5배수</u>
11명 이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u>10명 초과</u> 하는 경우 1명당 <u>3배수 + 50명</u>

다. 승진심사 대상에서의 제외(승진임용 규정 23조)

승진임용규정 6조(승진임용제한) 해당자와 36조1항(부정행위자 승진시험 5년 제한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4. 승진 심사의 실시

가. 심사요소(승진임용규정 24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을 심사한다.

- 1) **근무성과**(객관평가) : 현 계급에서의 근무·경력·교육훈련성적평정 등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X
- 2) 경험한 직책(객관평가) :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위원평가)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 나. 평가기준(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24조)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u>"객관평가"</u>와 <u>"위원평가"</u>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소방** 청장이 정한다.

다. 심사자료 근무성적평정표 X

- 1) 승진심사계획서
-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 3) 승진심사대상자 명부
- 4) 개인별 인사기록

- 5) 승진심사 사전심의표
- 6)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 기술서
- 7) 청렴도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결과(실시한 경우 한정)
- 8)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라. 승진심사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승진심사위원호(위원장 포함)·간사·서기 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마. 심사절차 및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25조)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1)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해 승진심사사전심의표에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 나) 가)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승진심사 사전심의 위원점수 집계표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객관평 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
 - 다) 나)의 심사환산점수와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 2)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u>전원합의</u>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u>투표</u>로 결정)한다. 이 경우에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 3)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 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1단계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바. 승진심사결과의 보고(승진임용규정 25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 1) 승진심사 의결서
- 2) 승진심사 **종합평가 결과서**
-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5. 심사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 가.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승진임용규정 26조)
 - 1) 계급별 명부 작성 :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 2) <u>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u>는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u>순위</u>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2)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u>감봉이상의 징계처분</u>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이를 **삭제**해야 하며,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해야 한다.
- 나.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승진임용규정 27조)
 - 1)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60%를 심사승진, 40%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 2)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해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 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 3) 심사승진임용은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승진시험

1. 실시워칙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2. 시험실시기관

가. **소방청장**(법 11조)

- 1)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 2)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의 승진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나 시도지사

- 1) 소속 소방장 이하 : 소방청장의 위임에 의해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 승진시험을 실시한다.
- 2) 시도지사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u>시험 문제출제</u>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3. 응시자격(승진임용규정 30조)
- 가. <u>1차 시험 실시일 **현재**</u>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 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4. 시험시행 및 공고(승진임용규정 31조)

- 가. 시험실시권자 : 소방청장 또는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 나. 공고 : 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일시 장소 기타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

5. 시험의 방법 및 절차

- 가. 응시서류의 제출
 - 1) 응시하고자 하는 자 :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
 - 2) 소속기관장 :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 나. 시험의 실시
 - 1) 시험의 방법
 - 가)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원칙, 과목별로 기입형 병과할 수 있다.
 - 나) 2차 시험 : 면접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 2) 단계별 응시제한
 - 가)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1차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다. 필기시험 과목(행안부령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28조 별표8)

구 분	과 목 수	필기시험과목
소방령 및 소방경 승진시험	3	행정법, 소방법령 ⋅ ⋅ , 선택1(행정학, 조직학, 재정학)
소방위 승진시험	3	행정법, 소방법령Ⅳ, 소방전술
소방장 승진시험	3	소방법령Ⅱ, 소방법령Ⅲ, 소방전술
소방교 승진시험	3	소방법령 , 소방법령 , 소방전술

비고

- 1. 소방법령 I: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소방법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 소방법령Ⅲ: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소방법령IV: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5. 소방전술: 화재진압·구조·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라. 시험의 합격결정(승진임용규정 34조)

- 1) **1차**시험: 매 과목 만점의 <u>40%</u> 이상, <u>전 과목</u> 만점의 <u>60%</u>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 2) **2차**시험 :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교육훈련성적·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결정한다.
- 3) 최종합격자 결정 : 1차시험 <u>50%</u> + 2차시험 <u>10%</u>, + 당해 계급 최근작성 승진대상자명부 총평정 <u>40%</u> ※ <u>2차시험</u> 실시하지 않는 경우 : 1차시험 <u>60%</u> + 승진대상자명부 <u>40%</u>
- 4) 동점자의 합격자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함에 있어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 초과시 다음 순위대로 결정
 -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3) 해당계급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마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실시권자는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자 또는 실무에 정통한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바.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관은 <u>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u>로 하며, 당해 소방관은 <u>5년간</u>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시험실시권자는 <u>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통보</u>해야 하며, 통보받은 <u>임용권자</u>는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6. 시험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가.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작성(승진임용규정 37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승진임용 하되,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u>감봉</u>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u>삭제</u>해야 한다.

다. 시험승진임용은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4

특별승진

1. 승진대상 및 계급범위(법 14조)

가. **순직**소방공무원

- 1) 순직자 특별승진
 - 가) 소방공무원으로 순직한사람은 1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 나) <u>소방위 이하</u>의(소방경 X)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u>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u>한 사람에 대해서는 <u>2계급</u>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2) 순직자 : 천재 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 3) 소방위 이하 순직공무원 중 2계급 특별승진 대상 :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나.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소방령 이하)

- 1)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정려 공적자
-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 공헌자
 - 가)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피해를 방지한 사람
 - 나)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 다) 교관으로 <u>3년 이상(2년 X)</u> 근무한 사람으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 라) 기타 소방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해 공을 세운 사람
- 3) 인사혁신처장 포상을 받은 공무원(국무총리 표창 이상)은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4) 창안등급 동상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 5) 해당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정한다.

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하는 공적자

- 1)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소방<mark>정감</mark>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 2) 명예퇴직 공적자는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행한 공적에 한정하지 않는다.

2. 승진임용 횟수 및 시기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mark>소방청장</mark>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수시로</u> 이를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승진의 특례 및 제한

구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승진임용 제한
순직 소방공무원	적용 X	적용 X
직무수행능력 탁월	적용 X	승진임용제한되지 않는 사람중 실시
인사혁신처장 포상	역용 / 	중산합용세인되시 않는 사람동 결시
직무정려 유공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3분의2 이상	승진임용제한되지 않는 사람중 실시
창안등급 동상 이상	중산포효죄시는구원구 3군의2 이성 	
명예퇴직 유공자	적용 X	승진임용제한되지 않는 사람중 실시

4.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 가. 재직기간중 <mark>중징계</mark> 처분 또는 <u>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징계</u> 처분을 받은 사실이 <mark>없어야</mark> 한다.
 - i. 국가공무원법 78조2의 1항 각 호의 징계사유(시효기간 5년인 경우)
 - ii. 성폭력 범죄
 - iii. 성매매
 - iv. 성희롱
 - v.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나. 20년 이상 근속 명예퇴직한 사람이 아래 각호에 해당시 <u>특진 취소</u>하고, 특진 <mark>전</mark>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 i.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ii. 재직 중 형법 129~132조뇌물, 사전·사후 수뢰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iii.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356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하여 <u>300만원 이상</u>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5. 특별승진심사

- 가. 특별승진심사 관할
 - 1)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소방청・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지방소방학교장
 - 2) 시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
- 나. 특별승진심사의 생략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중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 하는 경우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다.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35조)
 - 1) 공적사항 등 관련자료 제출

<u>소방기관의 장</u>은 특별승진심사대상 소방공무원의 <u>공적조서</u>와 <u>인사기록카드</u>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u>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u>은 공적의 내용을 <u>현지 확인</u>하거나 그 공적을 <u>증명할 수 있는 자료</u>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방법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u>찬·반 투표</u>로서 하며,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 예정자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개투표**해 결정한다.

3)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보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가) 승진심사의결서
- 나)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
- 다)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

6.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승진임용

- 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나.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5 근속승진

1. 대상계급 및 재직년수 (소방경 이하 가능)

가. 근송승진 소요기간

1) 사 -> 교 : **4년** 이상 근속 2) 교 -> 장 : **5년** 이상 근속

3) 장 -> 위 : **6년 6개월** 이상 근속

4) 위 -> 경: 8년 이상 근속

※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근속승진 법령규정

- 1) 근속승진 기간 단축 :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음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 가)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관은 인사교류기간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 단축 가능
 - 나)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은 <u>1년</u> 가산 가능하고 근속승진 기간 단축하는 <u>소방관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u>이 <u>제한할 수 있다</u>.
- 2) 근속승진의 대상 :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고, <u>최근 2년간 평균</u> 근무성적평정이 "양"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3) 소방경 근속승진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u>100분의 40</u>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 있는 경우 1명 가산)를 <u>초과</u>하여 근속 승진임용할 수 없다.

- 4) <u>임용권자는 소방경</u> 근속승진 임용시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 임용 예정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5) 임용권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소방위</u>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6) 근속승진 심사 시기 :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u>5일 전</u>부터 승진심사를 할수 있다.
- 7) 기타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비교	소방위 이하	소방경 (위->경)
계산기준일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	매년 4월30일, 10월 31일 기준
횟수	월 1회	연 2회
임용시기	매월 1일	매년 5월 1일, 11월 1일

※ 근속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향후 <u>1년 이내</u>에 정년으로 퇴직 예정된 <u>소방위</u>는 <u>우선</u>하여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6 대우공무원

1. 대우공무원 선발

가 대우공무워 선발대상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규정 5조 1항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 이하 소방공 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의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승진임용의 <u>제한 사유(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u>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제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u>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u>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소방령·소방정 : <u>7년</u> 이상 2) 소방사~소방경 : 5년 이상

나. 대우공무원 근무기간 산정(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36조 2항)

대우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은 승진임용규정 5조 2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의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 산정방법에 따른다.

다. 선발절차 및 시기(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37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u>매월 말 5일 전</u>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u>대상자를 결정</u>하여야 하고, 그 다음 <u>월 1일에 일괄</u>하여 <u>대우공무원으로 발령</u>해야 한다.

2. 대우공무원 수당

가. 대우공무원 수당지급(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38조 1항)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나. 대우공무원 수당 감액지급(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38조 2항)

대우공무원이 <u>징계 또는 직위해제</u> 처분을 받거나 <u>휴직</u>하여도 <u>대우공무원 수당은 계속 지급한다</u>.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 대우공무원 수당 소급지급(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38조 3항)

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 우공무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대우공무원 자격상실(임용규정 시행규칙 39조)

가. 승진임용되는 경우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다음날 X)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상실 된다

나. 강임되는 경우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선발되지 못한다 X

6장 복무 및 신분보장

1

복무

1. 소방공무원법상 의무

가. **복종의 의무**(법 34조 2호)

화재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자는 <u>5년 이하</u>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나. 직장이탈금지(법 34조 2호)

화재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u>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자</u>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u>에 처한다.

다. **거짓 보고** 등의 금지(법 21조)

- 1)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된다.
- 2)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21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u>에 처한다.(법 34조 1호)

라.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법 22조)

- 1)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법 22조를 위반한 때에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법 34조 3호) <mark>정치운동 X</mark>

2. 임용령의 복무규정

가. 육아휴직 분할 사용제

육아휴직 휴직명령은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시간선택제 근무

-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 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mark>제외</mark>한다.
- 2) 시간선택제근무는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u>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u>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5)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 6) 명령서 발급 :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 시간선택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근무해제명령서를 발급해야한다.
- 다.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대행자 제도
 - 1) 업무대행명령 :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는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가) 휴직 : 국가공무원법 71조1항 및 2항에 따른 휴직
 - 나) 병가 : 소방공무워 복무규정 10조, 국가공무워복무규정 18조 1항 2항에 따른 병가
 - 다)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 라) 시간선택제전환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
 - 2) 예외 : 해당 소방공무원의 휴직으로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해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 채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 3) 수당지급 : 예산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4) 명령서 발급 :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해해제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5) 업무대행 소방관 수 : 1명 지정원칙, 여러명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 초과못함

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가. 여행의 제한(4조)

1) 장거리 여행 신고의무

소방공무원은 <u>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u>로 <u>3시간</u>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소속 소방기관 장에게 **신고(허가 X**)해야 한다.

2)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

<u>비상근무</u>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u>소방기관의 장</u>의 <u>허가</u> (신고X)를 받아야 한다.

나.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5조)

- 1)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 2)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 근무방법

1) 교대제 근무(6조)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 2) 소방기관의 장은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u>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u>하게 할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라. 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7조)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의 현장(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마. 안전사고의 방지(8조)

- 1)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mark>소방청장</mark>이 정한다.

바. 공가(8조의2)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u>공가로 승인</u>해야 한다.

-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8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12.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사. 포상휴가(9조)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u>1회 10일 이</u> 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아. 준용(10조)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4. 특별위로금

가. 의의

- 1) 규정 :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급가능.
- 2)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1) 지급대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u>질병</u>에 걸리거나 <u>부상</u>을 입어 <u>요양급여의</u>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1.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 4. 「소방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 2) 지급기간 : 위로금은 공무상요양으로 소방관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u>36개월</u>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 3) 지급기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산정
 - 4) 지급신청

<u>위로금</u>을 지급받으려는 <u>소방공무원 또는 그 유족</u>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u>6개</u> <u>월 이내</u>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업무에 복귀한 날
- 2. 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
-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인용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 확정된 날

5. 공무원 보수규정

가. 강임 시 등 봉급 보전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나. 승급제한

-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영창 근신 견책 6개월
- 2) 금품•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징계처분은 각각 6개월 가산
- 3) 승급제한 기간 단축 : 공무원이 징계처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u>혼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 포상</u> <u>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 받은 경우 최근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1**을 단축할 수 있다.</u>
- 4)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실적 우수한 사람, 인사상 특전부여가 가능한 사람,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 5) 특별승급심사위원회 : 소속 장관별로 장관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별로 두고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3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다. 보수 지급 기관

보수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 변동시 보수 지급일 현재 소소긱관에서 지급한다. 전 소소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견공무원은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 보수를 지급한다.

라. 퇴직 후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면직된 사람이 법령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해 계속 근무한 경우는 <u>15일</u>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 보수의 감액

- 1) 징계처분기간 : 징계처분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 2) 결근기간 등 :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무급 휴가 사용시 그 일수 만큼 봉급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 3) 휴직기간
 - 가) 1년 이하 : 봉급의 70%
 - 나)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의 50%
 - 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 봉급 전액 지급
 - 라) 위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 휴직 : 봉급의 50%
 - 마) 해당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목적과 달리 휴직 사용시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해야 한다.
- 4)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 감액
 - 가) <u>직무수행능력부족</u> 등으로 직위해제 : 봉급의 <u>80%</u>
 - 나) 고위공무원단 <u>적격심사대상</u>으로 직위해제 : 봉급의 <u>70%</u>, 3개월 지나도 직위부여받지 못한 경우 <u>40%</u>
 - 다) <u>중징계의결요구, 형사사건, 금품비위</u>로 수사중인자의 직위해제 : 봉급의 <u>50%</u>, 3개월 지나도 직위부여받지 못한 경우 <u>30%</u>

바. 시간선택제근무하는 공무원 보수지급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u>근무시간에 비례</u>하여 봉급 월액을 지급한다.

2 신분보장

1. 신분보장의 원칙(국가공무원법 6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u>1급 공무원</u>과 23조에 따라 배정된 <u>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u>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정감 신분보장 안됨

2.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69조)

공무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

- 가. 결격사유에 해당(국가공무원법 33조)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중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중 형법의 수뢰, 제3자 뇌물제공, 횡령, 배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전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직권면직

- 가. 직권면직 사유(국가공무원법 70조)
 -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3) 국가공무원법 73조3제3항(직위해제)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4)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전직없는 소방관 적용 X)
 - 5)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해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u>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u>되어 담당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때
 -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u>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u>을 받은 때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나. 직권면직의 절차

- 1) 의견청취 : <u>임용권자</u>는 직권면직시킬 경우 **미리** <u>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u>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 후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u>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u>되어 <u>면직</u>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면직기준의 결정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제와 정원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른 폐직 또는 과원으로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
- 3) 심사위원회의 의결 :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임용일자의 소급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면직 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 5)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에 의한 직권면직일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한 날

4. 휴직

가. 직권휴직

공무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가) <u>신체·정신상의 장애</u>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u>1년</u>(부득이한 경우 <u>1년 연장 가능</u>)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3년 이내
-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 까지
- 다)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
- 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
- 마) 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 <u>자녀를 양육</u>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u>임신 또는 출산</u>하게 되었을 때 : 자녀 1명에 대해 <u>3년</u> 이내
- 바) 사고나 질병 등으로 <u>장기요양</u>이 필요한 <u>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의 간호</u>를 위해 필요한 때 : <u>1년</u> 이내(재직기간 중 총 <u>3년</u> 이내)
- 사) <u>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u>를 동반할 때 : <u>3년</u>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 연장가능)
- 아)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해 <u>학습·연구</u> 등을 하게 된 때 : <u>1년</u> 이내

나. 휴직의 효력(국가공무원법 73조)

- 1) 휴직 중인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u>30일 이내</u>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 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 3)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5. 직위해제

직위해제란 공무원 본인에게 직위를 계속 보유하게 할 수 없는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제는 휴직과 달리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 행하며, 제재적인 성격을 갖는다.

가. **직위해제 사유**

- 1) <u>직무수행능력이 부족</u>하거나 <u>근무성적</u>이 극히 <u>나쁜</u> 사람
- 2)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사람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70조의2 1항 2호부터 5호까지 사유로 <u>적격심사</u> 요구를 받은 자
- 5) <u>금품비위, 성범죄</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비위행위</u>로 인하여 감시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나. 직위해제자의 대기명령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직위해제의 효력

- 1) 직무담임 해제 : 직위해제되면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출근의무도 없다. 다만 대기명 령을 받고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 보수 :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봉급의 80%(직무수행능력부족), 또는 50%(기타) 지급
- 3)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6. 강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가. 강임의 사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임할 수 있다.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 본인이 동의한 경우

나. 강임된 공무원의 우선임용

- 1) <u>강임된 공무원</u>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승진시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mark>우선</mark>하여 승진임용**해야 한다. MUST**
- 2) <u>본인의 동의</u>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u>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u>하여 <u>우선 임용</u>**될 수 있다. CAN**
- 3)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u>2인 이상</u>인 경우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u>강임일자 순</u>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 강임되기 전 계급에 <u>임용된 일자의 순</u>에 의한다(임용령55조)

다. 강임의 범위(임용령 54조)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해야 한다.

라. 강임된 자의 봉급보전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 되기 전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정년

1. 소방공무원의 정년(법 25조)

가. 연령정년 : 60세

나. **계급정년**

소방감 : 4년
 소방준감 : 6년
 소방정 : 11년
 소방령 : 14년

※ 소방정감, 소방총감 : 계급정년 없음

다. 정년퇴직 발령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u>1월에서 6월 사이</u>에 있는 경우에는 <u>6월 30일</u>에 당연히 퇴직하고, <u>7월에서 12월 사이</u>에 있는 경우에는 <u>12월 31일</u>에 당연히 퇴직한다.

2. 계급정년의 계산(법 25조)

- 가.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u>근속 여부와 **관계없이**</u> 소방공무원 또는 <u>경찰공무원</u>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한다. 경찰공무원 근무기간 5할 X
- 나.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 강등 포함)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계급별 정년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른다.
 -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다. 계급정년의 연장
 - 1) 소방청장의 연장 :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u>비상사태</u>에서는 <u>2년의 범위</u>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소방령 이상 : <u>소방령 이상</u>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u>행안부장관의 제청</u>으로 <u>국무총리</u>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휴

1. 근거(법 18조)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mark>질병으로 사망</mark>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mark>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u>퇴직한 사람</u>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mark>

2. 신청방법(임용령 59조)

- ① 법 제18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u>국가보훈부장관</u>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u>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u>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u>지체 없이</u> <u>국가보훈부장관</u>에게 <u>통보</u>하여야 한다.
- 3. 지급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 가. 유족 또는 가족 범위(5조)
 - 1) 배우자
 - 2) 자녀
 - 3) 부모
 -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5) 60세 미만 직계존손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나. 보상금 지급 순위(5조)
 -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가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3)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 부모인 때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지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1년 이상 계속 행방불명인 경우

4. 보후대상

- 가. 국가유공자 :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순직군경(사망), 공상군경(전역, 퇴직, 상이, 질병)
- 나. 보훈보상대상자 :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재해사망군경(사망), 재해부상군경(상이, 질병, 전역, 퇴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 등

가. **기본계획**

5

- 1) 소방청장은 5년마다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u>기본계획</u>을 작성하고 <u>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u>과 협의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같다.
- 2)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연도별계획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u>매년</u>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시행연도의 <u>전년도 12월 31일</u> 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 1) 소방청장은 <u>5년</u>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u>실태를 조사</u>하고 그 <u>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u>해야 한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다. 집행계획

-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u>매년</u>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포함사항

기본계획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1.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집행계획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 가. 설치 : 소방청에 위원회를 둔다.
- 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다. 위원장: 소방청 차장 (소방청장 X)
- 라. 위원 : 다음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가능)
 -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획재정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 3. **소방청** 소속 공무원
- 마. 간사 :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바. 심의사항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사.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방법
 -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 나. 시 도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 2.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
 -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 나. 각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 ⑥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위원회의 의결</u>을 거쳐 <u>위원장</u>이 정한다

3.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전문치료센터

- 가.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1) 의료지원의 제공 : 국가는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2) 치료센터의 지정 :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3) 운영비용 : <u>국가 또는 지자체</u>가 부담하며,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 운영

구분	중앙	지역
병원	경찰병원(소방청장 지정)	보훈병원, 국공립병원 의료기관(시도지사 인정)
담당 업무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4.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 자 분석 및 질병연구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운영 비용	국가 또는 시도 가 부담	시도 가 부담
협의	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u>경찰정장</u> 과 협의	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함

3.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에 보건안 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나. 책임자의 종류
 - 1) 보건안전관리<u>총괄책임자</u> :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u>과장급</u> 소방공무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평가
 - 2.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3. 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지역 특성별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4. 안전보호장비의 점검
 - 5.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 6. 소방활동 안전사고 관련 기록 유지 및 통계자료 관리
 - 7. 그 밖에 소방활동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업무
 - 2)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3)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 2.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 상태의 확인
- 3. 그 밖에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보건의

- 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소방전문치료 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소방보건의의 자격 · 직무 · 권한 · 선임방법
 - 1) 소방보건의(消防保健醫)는 「의료법」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2) 소방보건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결과, 질병의 치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 3) 소방보건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다. 소방보건의의 직무
 - 1.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순회 진료 · 상담
 - 2.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 3.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 4.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의 분석
 -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의 운영

6. 기타 등

- 가. 소방기관의 장은 <u>복지시설</u>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소방공무원</u>과 <u>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을 말한다)</u>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나, 역학조사 및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소방경 이하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중앙 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재심 소방령 이상의 안사상담 및 고충심사

6 고충심사

1. 설치기관(법 27조)

가 중앙 고충심사위원회

- 1) 설치기관 : **인사혁신처**
- 2) 심사관할 :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u>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u>와 <u>소방령 이상</u>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나.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1) 설치기관
 - 가) 소방청
 - 나) **시도**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 2)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 가) 인원 :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 이 경우 **민간인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위원장 :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u>인사 또는 감사</u> 업무를 담당하는 <u>과장</u>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사람으로 한다.
 - 다) 공무원위원 : 청구인보다 <u>상위 계급</u>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 <u>포함</u>) 중에서 <u>설치기관의</u> <u>장</u>이 임명한다.
 - 라) 민간위원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하며, <u>한번만 연임</u>할 수 있다.
 - 1.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심리학, 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 중 조교수 이상 재직중
 -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법무사 X)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마) 회의 : <u>위원장</u>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u>5명 이상 7명 이하</u>의 위원으로 <u>성별을 고려</u>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바) 간사 : <u>몇 명</u>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중에서 <u>설치기관의 장</u>이 <u>임명</u>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사) 특례

설치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3. 고충심사절차

가. 고충처리의 구분

- 1)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성폭력범죄, 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와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처리과정에서 고충심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상담은 고충을 제기한 사람(청구인)의 동의,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3) 임용권자 조치 : 임용권자 등은 상·하급자나 동료,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또는 위법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 심사가 청구된 경우로서 고충의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에게 조치의 이행 및 결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 나) 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
 - 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나. 고충심사청구(공무원고충처리규정 4조)

- 1)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 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가) 주소, 성명 및 생년원일
 - 나)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 다)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2)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해야 한다.
- 3) 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mark>흥</mark>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u>7일 이내</u>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 다. 회피 및 기피(공무원고충처리규정 6조)
 - 1)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 2)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u>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u>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u>기피</u>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라. 고충심사절차(공무원고충처리규정 7조)
 - 1) 결정기한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심사자료 제출요구 등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청취서 또는 문답서 작성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심사일의 통지 :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 5)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6)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엔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 7) 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8)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 가)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 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 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요청
시정을 요청할 정도가 아니거나,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9) 결정서작성 및 송부(공무원고충처리규정 11조)
 - 가)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 명·날인** 해야 한다.
 - 나)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4. 고충심사결과처리

- 가.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나. 심사결과 중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다. 심사결과 중 개선 권고를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설치기관의 장은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설치기관의 장은 공개 내용에 다른 기관의 이행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결정서를 송부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소방공무원 고충심사처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해 <u>불복</u>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 <u>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u>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7 기타공무원법

1. 행정소송의 피고

가. 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 소방청장을 피고로한다. 나.임용권을 위임한 경우

소방공무원법 6조3항 및 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2. 소방학교 등의 설치 • 운영

- 가. 중앙소방학교의 설치·운영 :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해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나.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다. 위탁교육 등
 - 1) 위탁교육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 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2)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으로 정한다.

3. 소방청장의 지휘감독

- 가.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u>인사행정</u>이 소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감독 한다.
- 나.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해야 하며 복제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 다. 소방공무원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1. 목적(1조)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착용수칙(2조)

가. 제복착용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복장과 용모단정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제복

- 가. 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 ②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③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
 - 1. 소방복 :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방화복 X**), 특수복 및 외투
 - 2. 소방모 : 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
 - 3. 소방화 : 단화 및 기동화
 - 4. 계급장 :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 5. 휘 장: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119배지**
 - 6. 부속물: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
- 나. 제복의 착용 기간
 - 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여름철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 :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 ③ 하복·동복 선택착용 가능: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및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다만, 정장착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제복으로 통일하여 착용해야 한다.
- ④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u>달</u>리 정할 수 있다.

4. 지급기준

- 가.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지급품)은 <u>기본품목</u>과 <u>선택품목</u>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 나.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 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지급품의 재지급
 -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u>대용</u>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 라. 제복의 지급방법
 -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마. 제복 수요의 보고
 -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복의 착용 구분

- 가.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 나. 제복의 차림새
 - 1)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모
 - 2. 정복 상의
 - 3.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 5. 단화
 - 6.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 7.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매표장 및 119배지
 - 8.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 2)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무모 또는 정모
 -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 3. 점퍼
 -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 5 단화
 - 6. 계급장
 - 7. 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 8. 넥타이(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장을 착용하는 때에 준하여 착용한다),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 3)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무모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파카
 - 4. 단화 또는 기동화.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 5. 계급장
 - 6.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 7. 허리띠(천) · 이름표 등
 - 4)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 2. 특수복
 - 3. 단화 또는 기동화
 - 4. 계급장
 - 5.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다. 제복의 쓰임새

- ①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 2.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③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특별조사 X
 -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④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⑤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라. 그 밖의 제복

-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작 양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5. 소방공무원 기장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① 소방공무원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 2.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헌신장 근속 40년 이상

헌소봉안 4321

소방장 근속 30년 이상

봉사장 근속 20년 이상

안전장 근속 10년 이상

- 3.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 수여
- 4.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3년 이상)
- 5.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소속 기관장의 추첨을 받아 소방청장이 심사결정한다.
- ②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u>사망</u>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u>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u>에는 그 <u>유족 또는 대</u>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조(수여권자등)

- ① 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 1. 소방<u>지휘관장</u>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
 - 2.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
 - 3.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 ②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시장,군수,구청장 X)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③ 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패용)

- ① 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u>퇴직한</u> 후에는 **본인이 이를 보유**
- ② 소방기장은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mark>소방청장</mark>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1. 총칙

8

- 가. 목적 :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정의
 -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 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을 말한다.
 - 3. "직장훈련"이란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다. 교육훈련의 기회 :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 라. 교육훈련의 성과 측정 :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하며, 확인·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이 정한다.

2.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해야한다X
 -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장·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5.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 ※ 교육훈련계획
- 1. 교육훈련의 목표
-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 련,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소방청 기획조정관
 -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 3. 중앙소방학교의 장
 - 4.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 등

-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 ②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한다.
- ③ 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원격강의시스템 등 교육훈련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⑤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분		대상		방법
	가. 신임교육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시보임용 전에	
1 기본 교육 훈련	나. 관리역량 교육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이 받는 교육 1. 소방위 계급(소방위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 2. 소방경 계급(소방경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 3. 소방령 계급(소방령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	교육훈련기관 실시	
다. 소방정 ³ 관리자교육		소방정 계급(소방정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	포함한다)	
2. 전문교육훈련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소방 령 이하	직장훈련 실시 교육훈련기관 가능 위탁교육훈련 가능
3. 기타교육훈련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 모든 계급		직장훈련 실시
4. 자기개발 학습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 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 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활동	모든 계급	

[※] 해당 게급에 임용되기 직전 또는 해당계급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계급의 관리역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교육훈련계획

- ①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 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 교육훈련의 <mark>목표</mark>
 -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u>기체 없이</u> 이를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개방

- ① 소방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 1.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
 - 2. 교육훈련기관별로 특성화된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
 - 3. 교과목, 교재, 교육훈련용 콘텐츠 등 교육훈련과정의 공동 개발·활용
 - 4. 교수요원,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상호 활용
 - 5.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
 - 6. 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상호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6. 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 ①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7. 교육훈련비의 지급 및 복무의무 등

- 가. 교육훈련비의 지급 : <u>소방기관의 장</u>은 <u>교육훈련대상자</u>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등록 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나. 신임교육 이수자의 복무의무 : 신임교육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 다.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12개월 12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 라.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임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에 든 경비(보수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 하거나 훈련에서 <u>탈락</u> 된 경우	소요경비 $ imes rac{1}{2}$
2. <u>의무복무</u>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경비 × 의무복무개월수 — 근무개월수 의무복무개월수
3. 복귀명령 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소요경비 전액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1.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기간·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구 분	교 육 :	훈 련 과 정 명	교 육 훈 련 대 상	교 육 훈 련 기 간	중 상 상 학 교	지 방 소 방 학 교
71		소 방 장 이 하 공채·경채자 과정	소 방 장 이 하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 람	52주 이내	0	0
	신 임 교 육	소 방 위 이 상 경 채 자 과 정	소 방 위 이 상 소 방 공 무 원 으 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12주 이상	0	
기 본 교 육		소 방 간 부 후 보 생 과 정	소 방 간 부 후 보 생 선 발 시 험 합 격 자	52주	0	
육	관 리 역 량	소 방 위 과 정	소방위 및 소방위 승진후보자	1주 이내	0	0
	역 량 교 육	소방경·소방령과정	소방경·소방령 및 소방경·소방령 승 진 후 보 자	2주 이상	0	
	소 방 정	책 관 리 자 교 육	소방정 및 소방정 승진후보자	24주 이내	0	

※ 전문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 1개 과정당 교육훈련시간 7시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 2. 교육훈련과정
-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수요목(敎授要目), 기간, 대상 및 인원
- 4.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계획
- 5. 교재 편찬계획
-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 7.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 ① <u>소방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소방기관장등)</u>는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 ②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은 그로 인한 업무의 정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③ 소방기관장등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장등에게 교육훈련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기관장등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 ⑤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전에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수료 및 졸업

- ① 각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100점 만점에 <u>60점 이상</u>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 도 등을 기준으로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입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교육훈련기 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 1.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람일 것
 -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u>각 과목</u>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u>60점 이</u>상인 사람일 것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6. 퇴교처분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퇴교처분</u>을 할 수 있고, 퇴교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의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 3. 수업을 <u>매우 게을리</u>한 경우 수료 졸업요건 X
 - 4.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 5. 시험 중 <u>부정한 행위</u>를 한 경우
 -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u>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u>
 -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5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 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7.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기관장등은 제17조에 따른 <u>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u>에 대해서는 <u>한 차례에 한정</u>하여 <u>다시 교</u> 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u>수료점수가 미달된 자</u>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8. 교수요원의 운영

제20조 교수요원의 운영

-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 1. 강의 또는 훈련
 - 2. 교과연구 및 교재집필
 - 3. 교육훈련과정의 설계·운영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 4.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지도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제21조 및 제32조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20조 및 제3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u>실무·연구</u> 또는 <u>강의 경력</u>이 <u>3년 이상</u>인 사람
-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u>자격증</u>을 소지한 사람
-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4.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u>6개월 이상</u>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5. 담당할 분야와 관련하여「고등교육법」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u>교수·부</u> 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6. 그 밖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
- 2. <u>징계처분</u>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u>끝난 날부터 2년</u>이 지나지 않은 사람
- 3. <u>직위해제</u> 처분이 <u>종료된 날부터 1년</u>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24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에게 강의, 훈련, 교육운영 등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주기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수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수 있다.

제25조(교수요원의 전보)

필수보직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9. 교육훈련시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u>옥내</u> 훈련시설	전문구급 훈련장, 수난구조 훈련장, 화재조사 훈련장, 소방시설 실습장, 가상현실 훈련장
<u>옥외</u> 훈련시설	소방종합 훈련탑, 산악구조 훈련장, 소방차량 및 장비조작 훈련장, 실물화재 훈련장, 대응전술 훈련장
교육지원시설	업무시설, 강의시설, 관리시설, 편의시설, 주거시설, 저장시설

10.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교육 <u>훈련기관의 장</u>은 제1항 <u>1호 및 2호</u>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에는 <u>소방청장</u>과 협의해야 한다.
 - 1. 입교·퇴교·상벌에 관한 사항
 - 2.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 · 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 4. 제28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 5. 수탁교육생에 관한 사항
 - 6. 교육훈련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 7. 교수요원 등의 선발 · 위촉 · 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직장훈련

제30조(직장훈련의 실시)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1조(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① <u>소방기관의 장</u>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mark>소방청장</mark>이 정한다.

제32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1. <u>공직가치</u> 확립 및 <u>정부 시책</u>에 대한 교육 교육훈련 평가 X
- 2.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 직무 전문기술훈련
- 3.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 4. 체력향상을 위한 훈련
- 5. 직장훈련 시간 <u>총량</u>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부서별 · 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제33조,34조(직장훈련담당관)

-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두고 해당 소방기관장이 지정한다.
- ②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1. 직장훈련 계획 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
 - 4.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6조(위탁교육훈련의 실시)

- ① <u>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u>는 교육훈련대상자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u>곤란</u>하거나 <u>부적</u>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u>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 간에 상호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위탁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 3. 훈련의 종류별·분야별 인원
-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 5. 훈련대상자 및 훈련 이후의 보직 계획
- 6. 훈련비 명세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7. 의무복무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직무수행태도우수 X
- 3. 훈련에 필요한 학력 · 경력을 갖춘 사람
-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 6.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39조(훈련과제의 부여)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u>업무와 관련되는 훈</u>련과제를 부여해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제40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 ① <u>소방기관의 장</u>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교육훈련기 관의 학칙 준수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거주지, 신상, 훈련성적, 훈련진도, 훈련결과,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④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mark>사직</mark>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mark>사직원을 제출</mark>해야 한다.

제41조(복귀명령)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40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 2.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2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 ① <u>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u>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u>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u>.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으로 본다.

제43조(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① 국<mark>외</mark>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u>귀국보고일부터 30일 이내</u>에 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제44조(준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7장 징계 및 불복

1

징계의 의의

1. 개념

가. 징계의 개념

- 공무원의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용자의 지 위에서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
- 공무원관계에 근거하여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나. 징계의 목적과 한계

징계처분은 공무원 관계의 <u>내부질서를 유지</u>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부질서 유지 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는 처분에 그쳐야 한다.

다. 징계벌과 형사벌

징계의 내용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 박탈에 한정된다.(형사벌 : 신분박탈 + 재산박탈 + 신체적이익 박탈)

구분	징계벌	형사벌
권력의 기초	공무원 관계	국가의 일반통치권
제재의 목적	공무원 관계 내부적 질서 유지	일반사회의 질서유지
제재의 내용	<u>신분적 이익 전부 또는 일부</u> 박탈	<u>신분적 이익</u> , <u>재산</u> , <u>신체적 이익</u> 박탈
제재의 대상	공무원, 공무원법상 의무위반	일반국민, 형사법상 의무위반

라. 징계벌과 형사벌의 병과

- 1) 동일한 행위에 대해 <u>정계책임과 형사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으며</u>, 병과하더라도 <u>일사부재리의 원칙</u>에 <u>반하</u> 지 아니한다.
- 2) 형사재판 <u>금고 이상의 형</u>을 받으면 당연퇴직이고 <u>징계벌을 과할 수 없다</u>. 무죄 판결 받았다 해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
-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2. 징계의 사유

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78조)

-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u>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u>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u>부과된 의무</u>를 <u>포함</u>한다)에 <u>위반</u>하거나 <u>직무를 태만</u>한 때
-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재직중, 임용전 포함)
- ※ 직위해제 사유 : 직무수행능력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때

나. 감사원법상의 징계사유(감사원법 32조)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u>감사원법</u>에 따른 <u>감사를 거부</u>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 그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징계부과금(국가공무원법 78조의2)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다음 <u>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u>(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국고금 관리법 2조1호에 따른 국고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보조금
 - 국유재산법 2조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조1항에 따른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조1호 및 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징계사유의 승계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u>발생한 날</u>로부터 <u>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징</u>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징계사유의 시효(국가공무원법 83조의2)

- 가. 조사·수사중인 사건: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통보 또는 **검찰·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에 서 수사중인 사건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u>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u>인 경우 징계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u>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u>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 나. 감사원과 조사와의 관계등
 - 1) <u>감사원에서 조사 중</u>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u>진</u>행하지 못한다. must
 - 2) <u>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u>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u>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can
 - 3)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u>10일 이내</u>에 <u>소속 기</u> 관의 <u>장</u>에게 그 사실을 <u>통보</u>해야 한다.
- 다.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과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 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지나 거나 그 남은 기간이 <u>3개월</u>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u>3개월 이내</u>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라.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 사유의 시효
 - 1) **10년** : 성매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2) 5년
 - 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취득
 - 나) 국가•지방예산 및 기금, 국고금, 국유재산 및 물픔 등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 ※ 징계사유 시효기간이 5년인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의 <u>상급자</u>에게 **감독소홀** 책임징계시 징계시효기간은 <u>3년</u>

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징계의 종류(국가공무원법 79조)

가. 신분의 배제여부에 따라

1) 배제징계 : **파면, 해임**

2) 교정징계 :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나. 징계양정의 경중에 따라

1) 중징계: <mark>파면, 해임, 강등, 정직</mark>

2) 경징계 : **감봉, 견책**

※ 의무소방대 징계 : 영창, 근신, 견책

2. 징계의 효력

종류	배제징계	급여징계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임용제한	1. 퇴직급여 5년 미만 : 4분의1 감액 2. 퇴직급여 5년 이상 : 2분의1 감액 3. 퇴직수당 2분의1 감액
해임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임용제한	1. 퇴직급여 전액 지급 2. 금전,물품,향응수수, 예산 • 기금횡령시 - 재직기간 5년 미만 : 퇴직급여 8분의1 감액 - 재직기간 5년 이상 : 퇴직급여 4분의1 감액 - 퇴직수당 4분의1 감액
강등	1계급 직급 강등 3개월 직무종사 금지	1. 직무종사 금지 기간중 보수 전액 감액
정직	1~3개월 직무종사 금지	1. 직무종사 금지 기간중 보수 전액 감액
감봉		1. 직무종사 금지 기간중 보수 <u>3분의1</u> 감액 2. 처분집행 종료일부터 <u>12개월</u> 동안 승진·승급제한 ※ 금전, 물품, 향응수수, 예산, 기금횡령 + 성폭력등 징계는 6개월 가산
견책		1. 처분집행 종료일부터 <u>6개월</u> 동안 승진·승급제한 ※ 금전, 물품, 향응수수, 예산, 기금횡령 + 성폭력등 징계는 6개월 가산

3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 설치

가. 중앙징계위원회

- 1)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2)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mark>준감</mark> 이상의 소방관의 징계의결은 시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 1) 소방청 및 소속기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을 하기 위해 소방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 2) 시 도 및 소속기관 :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해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3)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절 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징계위원회의 관할

관할	정	령	경	위	
가. 소방청 징계위원회					
1. 소방청 소속	정 이하 소방공무원				
2 그리스바여그의 소소	기기	중징계			
Z. 독립도당인구현 도록 	2.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징계 징계		<mark>중징계</mark>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		
3.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징	계	중징계 등	· 요구사건	
나 즈아시바하고 미 즈아110그코티브 기계이이히			징	계	
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다 그리시바여그의 기계이이형	징계				
다. 국립소방연구원 징계위원회		징계부가금 부과사건			
라. 시도 징계위원회					
1.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	1.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				
2. 시도 소속 소방 경 이상 징계					
3. 시도 소속 소방 위 이하 중징계 등 요구 사건	3. 시도 소속 소방 위 이하 중징계 등 요구 사건				
마.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	마.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위 이하 징계등 사건			등 사건	

※ 2인 이상소방공무원 관련사건의 관할

임용권자가 동일한 2인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워노히가 다른 경우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 1) 그 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상급 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2) 각자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3) 위 방법에 의해 징계의결등 기관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u>소방서 간</u>의 경우 **시도지사**가, <u>시도간</u>의 경우 <mark>소방청장</mark> 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3.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의 구성

- 1) 소방청 징계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 2) <u>기타</u> 징계위원회 : <u>위원장 1명을 포함</u>하여 <u>9명 이상 15명 이하</u>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
- 3)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위원장

- 1)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가 된다.
- 2) 시·도 소방공무원 <u>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u>은 해당 정계위원회의 <u>위원장</u>을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 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3)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mark>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mark>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공무원 위원

- 1) 다음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
 - 가) 징계등 혐의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 일반직(고위공무원단 포함) 국가 지방공무원
- 2)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 수가 위원 수에 미달 되는 경우
 - <u>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u> 중에서 <u>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u>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라. 민간위원

1) 민간위원 위촉 자격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청 및 시도 설치된 징계위원회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휘
1. 법관·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근무	1. 법관ㆍ검사ㆍ변호사 5년 이상 근무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소방 관련 학문을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중인 사람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재직중인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이상 근무후 퇴직한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후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4. 민간부문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 2) 민간위원의 특정성별과 임기
 - 가)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마. 징계위원회의 간사

- 1) 인원 :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 2) 임명 :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3) 역할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

4. 징계위원회의 회의

가. 회의의 운영

- 1) 회의의 구성 :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 2) **민간위원의 수**는 회의하는 경우 **민간위원**이 <u>위원장을 포함</u>한 <u>위원수의 **2분의1** 이상</u> 포함되어야 하며, <u>동일한 자격요건</u>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u>지정해서는 안된다</u>.
- 3) 성별 위원의 구성 : <mark>성폭력, 성희롱</mark> 등의 징계사건이 속한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u>같은 성별</u> 위원이 위원장을 <mark>제외</mark>한 위원수의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4) 회의의 **비공개** 사항
 - 가) 징계위원회의 회의
 - 나)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 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 포함)
 - 라)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5) 비밀누설금지 :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 징계의 양정

1. 징계 양정의 기준

- 가. 징계의 정도에 관한 기준
 - 1) 징계의 정도 또는 양정 : 징계의 대상이 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의 종류 및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2) 고려사항: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 등 요구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2. 징계의 감경 및 가중 등

- 가. 행위자의 감경사유 : 행위자에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 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u>중점관리대상 비위는 그렇지 않다</u>.
 - 1)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 3) 비위의 원인이 <u>능동적 직무수행</u>에 있고 <u>자진신고</u> 한 경우
 -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u>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u>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 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 :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 감독자의 감경사유 : **감독자**(문책순위 1 해당자 <mark>제외</mark>)에 대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게책임을 감경하여 징게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보고 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 2) 행위자의 비위가 <u>근무시간 이외</u> 또는 <u>휴가 중 발생</u>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 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라. 징계의 감경의결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중점관리대상 비위는 그렇지 않다.
 - 1) <u>상훈훈장</u> 또는 <u>포장</u>을 받은 공적
 - 2)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소방경 이하는 차관급[시도지사 포함]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 3)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4) 행위자나 감독자가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와 다)

5 징계의 절차

1. 징계의결등의 요구

- 가. 징계의결 요구권자(징계령 9조 1항)
 - 1) 소방<u>**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u> : 소방청장 다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u>준감이상</u>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
 - 2)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 나. 징계의결 요구방법(징계령 9조 3항)
 - 1)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되, <u>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u>하여 요구 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 계요구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 2.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 3.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 가. 비위행위 유형
 -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 8. 징계등 사유가 다음 성폭력, 성희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 2) 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부가 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u>사본</u>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3)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다. 징계사건의 통지(징계령 10조)
 - 1)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해야 한다.
 - 2)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mark>갖지 아니하는</mark> 소방공무원에 대해 <u>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u>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공무원 징계등 처분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 3) <u>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u>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u>통지를 받은 날부터</u> <u>30일 이내</u>에 관할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중 <u>파면</u>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 4) 징계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건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장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해야 한다.

2.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가. 출석통지서 송부

- 1) 직접송부 :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u>3일</u> 전까지 그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u>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u>하게 한 경우를 <u>제외</u>하고는 출석 통지서 <u>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u> 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2) 간접송부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mark>주소를 알 수 없거나</mark> 그 밖의 사유로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통지서를 징<u>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u>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u>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u> 징계등 <u>혐의자에게 전달</u>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출석통지서의 관보게재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시·도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 서면심사에 의한 징계의결

- 1) 진술권 포기서 제출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 2) 출석통지에 불출석 :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 3) 일정 기간 이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라. 출석통지서 수령거부자의 조치

- 1)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2)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 의 수령을 거부하면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가. 징계위원의 제척 : 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u>사유와 관계</u>가 있는 경우

나. 징계위원의 기피

- 1) 징계등 <u>혐의자</u>는 위원 중에서 <u>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u>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2) 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u>피 여부를 <u>의</u> 결해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징계위원의 회피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u>스스로</u>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 • 의결을 <u>회피</u>하여야 하며, <u>기피 사</u>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제척 must / 기피 can

라. 임시위원의 임명

- 1) 징계위원회는 위원의 제척・기피로 인하여 출석위원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과산수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의 대상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 2) 임시위원을 보충임명 할 수 <mark>없는</mark>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u>철회</u>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4. 심문과 진술권

가. 징계등 혐의자 심문 등

- 1) 심문 :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u>심문</u>을 하고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u>심문</u>할 수 있다.
- 2) 진술기회 부여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u>혐의자</u>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 는 <u>서면 또는 구술</u>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3) 증인의 심문 신청 : 징계등 <u>혐의자</u>는 <u>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u>의결</u>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징계의결 등 요구자(신청자) 등의 진술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u>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u>하거나 <u>서면으로 의견을 제출</u>할 수 있다. 다만, <mark>중징계</mark>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징계위원회에 <u>출석</u>하여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다. 사실조사 및 감사원에 대한 통보

- 1)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u>사실 조사</u>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중<mark>징계</mark>
- 2)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u>감사원</u>이 <u>파면, 해임, 강등, 정직</u> 중 어 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 3) 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 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mark>중징계</mark>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u>피해자</u>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과정에서 <u>충분히 의견을 진술</u>하여 <u>다시 진술할 필요가</u>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징계등의 의결

가 징계의결기한

- 1) 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징계의 결 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2)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서 제외한다.

나. 우선심사

- 1) <u>신속한 징계절차</u> 진행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2) <u>퇴직예정일이 2개월</u> 이내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 포함)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 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u>2개월 이내</u>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 3) 혐의사실을 인정 :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4) 우선심사 신청서 제출 :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u>우선심사 신청서</u>를 <u>관할 징계위원회</u>에 제출해야 한다.
- 5) 우선심사 :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 1) <u>의결정족수</u> : <u>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u>하고 <u>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u>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u>과</u> <u>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u>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2) 서면 의결 : 징계의결등의 <u>기한 연기</u>에 관한 사항은 <u>서면으로 의결</u>할 수 있다. 셔면의결의 절차·방법은 **소방 청상**이 정한다.
- 3)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u>징계등 의결서</u>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가) 징계등 원인이 된 사실
 - 나) 증거의 판단
 - 다) 관계법령
 - 라) 징게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 마)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 4) 징계의결등사항의 범위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요구 의견에 기속 받지 않고 징계의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불문에 붙인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의결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라. 워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1)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 (출석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u>원격영 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u>. 이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3)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마. 징계의결등의 통지

- 1) 징계위원회는 <u>징계의결등을 했을 때</u>는 <u>지체없이</u> 징계의결등을 <u>요구한 자</u>에게 <u>의결서 **정본**을</u> 보내어 통지해야 한다.
- 2) 징계의결 통지를 받은 소방기관장은 지체 없이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징계처분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3) 대외적 징계 효력 : 징계위 의결 자체는 행정부 내부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대외적인 징계효력이 발생한다.

6 징계의 집행 및 불복신청

1 징계집행기관

가. 소방공무원 징계 집행

- 1)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 2) 국가공무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 3) 파면·해임의 집행: 파면·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위임자 제외)가 한다.
- 나.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집행
 - 1) <mark>시도지사</mark>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u>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u>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 2) <u>시·도 소속 소방기관</u>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u>징계위원회(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u>단, 소방체험관)에서 의결한 정**직·감봉·견책**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2. 징계처분 등

가 징계처분 등

- 1)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 교부 :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u>15일 이내</u>에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2) 임용제청권자가 교부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해야 한다.
- 3)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 : 장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 <u>지체없이 의결서 **정본**</u>을 보내어 그 처분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 4)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사항 :성<mark>폭력범죄, 성희롱</mark>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해야 한다.
- 5)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6)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집행결과의 보고 및 통지

<u>임용권자와 징계등 집행권자</u>가 다를 경우 징계등 처분권자가 <u>강등, 정직, 감봉, 견책</u>의 징계처분등을 하였을 때에 는 지체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u>임용권자</u>와 그 소방공무원 <u>소속 소방기관 장</u>에게 <u>통지</u>해야 한다.

3. 불복신청

- 가. 징계의결등요구권자의 불복신청
 -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소방공무원 징계의결을 요구한 <u>기관장</u>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u>경(輕)하다</u>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mark>전</mark>에 아래 <u>직근 상급기관</u>에 설치된 <u>징계위원회</u>에 <u>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u>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 나)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시·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 다) 시 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방법 : <u>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장</u>은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u>통</u> 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적은 <u>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u>에 <u>의결서 **사본** 및 <u>사건</u>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u>
 - 가)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 나)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 다)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
- 나. 징계처분 받은 자의 불복신청
 - 1) 소청심사청구
 - 가) 징계처분등에 불복하는 경우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처분(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u>그 설명서를 받은 날</u>부터 <u>30일 이내</u>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나)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mark>외</mark>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 <u>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u>부터 <u>30일</u>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소청의 관할 :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3) 소청심사 청구방법 : 다음 사항을 소청심사청구서에 **사본** 1통과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다. 감사원의 재심의 요구
 - 1) 심의 또는 재심요구 : 감사원은 감사원에서 파면 요구한 사항이 <u>파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u>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u>1개월 이내</u>에 해당 징계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u>바로 위 상급기관</u>에 설치된 <u>징계위원회</u> 등(바로 위상 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등이 <mark>없는</mark>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직접 심의·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2)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 감사원으로부터 심의 또는 재심의 <u>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u>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u>1개월 이내</u>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u>지체없이</u> 해당 <u>징계위원회 등의 위원장</u>이 <u>감사원</u>에 통보해야 한다.

※ 소방공무원 각종 **위원회**

명칭	설치기관	구성 및 의결	기능
소방공무원 인사의원회	소방청 시도	위원장 포함 <u>5명 이상 7명 이하</u> 위원 의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인사행정의 방침•기준 인사법령의 제정•개폐사항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의원회	중앙승진심사위원회(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u>5명 이상 7명 이하</u> 위원장 포함 <u>7명 이상 9명 이하</u> 의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고충심사 위원회	중앙고충심사위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고창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u>7명 이상 15명 이하</u> 의결: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철석위 원 과반수의 합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 119구조본부, 시도, 지방소 방학교, 종합방재센터, 소방 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 체험관	소방청 징계위원회 위원장 포함 17명 이상 33명 이하 기타 징계위원회 위원장 포함 9명 이상 15명 이하 의결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 계급별 채용

퇴직당시 계급으로 채용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3년 내 재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사바려 이를 케요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소방령 이하 채용 	5급 공채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의사
소방경 이하 채용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A H-O O → → O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
소방위 이하 채용 	경찰공무원을 임용
소방사로 채용	의용소방대원의 임용

〈소방공무원법령상 각종 위원회 비교〉

명칭	구성 및 의결기능		
소방공무원	위원장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소방공무원	중앙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		
승진심사	보통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		
고충심사 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3 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소방청 : 위원장 1명 포함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기타 :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장 포함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소청심사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수의 2분의1 이상 비상임위원		

※ 동점자 처리의 비교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채용후보자	4. 취업보호 대상자			
명부작성	5.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0770	6. 연령 이 많은 사람 순			
	5. 근무성적평정이 높은 사람			
승진대상자	6.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명부작성	7.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8.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높은 순서 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승진후보자	심사승진 60% + 시험승진 40%			
임용	1. 특별 승진 -> 2. 심사승진 -> 3. 시험승진			